

세법연구 06-02

#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2006. 8

한상국 · 구자은 · 황진영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5
II.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1. 가산세제도의 현황	7
2. 문제점	8
가. 법체계상의 문제점	8
나. 납세자의 선·악의와 관련된 문제점	8
다. 가산세 감면사유와 관련된 문제점	9
III.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10
1. 미 국	10
가. 개 관	10
나. 내 용	11
2. 일 본	21
가. 개 관	21
나. 내 용	22
3. 독 일	27
가. 개 관	27
나. 내 용	27
4. 프 랑 스	31
가. 개 관	31
나. 프랑스 가산세제도의 특징	31
다. 내 용	32
5. 영 국	35
가. 개 관	35
나. 내 용	35

6. 시사점 -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	39
<b>IV. 결론</b> .....	<b>43</b>
<b>참고문헌</b> .....	<b>44</b>
<b>부록: 주요국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미국, 일본, 독일)</b> .....	<b>46</b>
1. 미국의 가산세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	46
2. 일본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國稅通則法) .....	52
3. 독일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Abgabenordnung, AO) .....	66

## 표목차

〈표 Ⅱ-1〉 우리나라의 가산세(개요) .....	7
〈표 Ⅲ-1〉 미국의 각종 가산세 .....	18
〈표 Ⅲ-2〉 일본의 부대세(가산세를 중심으로) .....	26
〈표 Ⅲ-3〉 독일의 가산세 .....	30
〈표 Ⅲ-4〉 프랑스의 가산세 .....	34
〈표 Ⅲ-5〉 영국의 가산세 .....	38

# I. 서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재로서,<sup>1)</sup> 우리 세법은 주로 각 개별세법에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산세제도는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포괄할 만한 통칙적 규정도 구비하지 않은 채 각 개별 세법에서 산만하게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선의와 악의의 납세자도 구별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의 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 가산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 구조는 각 국가별로 기본적인 가산세제도를 소개하고 납세자의 악의에 의한 체납시 부과되는 처벌을 그 유형별로 나누어 이를 각국 세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각국의 가산세제도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國稅通則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租稅基本法(Abgabenordnung, AO)에서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租稅一般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직접세의 조세절차와 조세징수에 대한 법률인 租稅管理法(Taxes Management Act, TMA)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로 다른 기준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양자를 규율하고 있고, 유럽권의 경우도 독일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해, 프랑스와 영국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

---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참조.

다. 이들 국가들 외에 각국의 전체적인 경향은 주로 법인과 개인 간에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 경우 법인에 대해 개인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sup>2)</sup>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토대로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를 통한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를 자세히 검토한 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보고자 한다.

---

2) 손광락,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pp. 40~41.

## II.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 가산세제도의 현황

〈표 II-1〉 우리나라의 가산세(개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산출세액 × 20%</li> <li>•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 × 20%와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li> </ul>	
		미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과소신고: 미달신고 산출세액 × 20%</li> <li>• 기타: 미달신고 산출세액 × 10%</li> </ul>	
	법인세	무신고 무기장	무신고소득금액 50억원 초과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30%, ② 수입금액 × 0.1%
			위 이외의 경우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미달신고	과세표준 1/3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과소 산출세액 × 30% ② 수입금액 × 0.1%
			위 이외의 경우	과소 산출세액 × 10% (부당과소 20%)
	상속세	신고불성 실가산세	(산출세액 + 할증가산금액 <sup>1)</sup> ) × 10% (무신고, 가공채무·명의신탁 등 사유는 20%)	
부가세 양도세 등	무신고 미달신고	무신고·미달신고 세액, 초과 환급세액 ×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부가세 등 대부분의 세목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일 0.03%)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미납세액 × 10%	

주: 1) 할증가산금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30% 할증과세.

## 2. 문제점

현행 우리 가산세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그 중 가장 주요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법체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는 각 개별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통칙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가산세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제도를 일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산세제도가 각 개별 세법에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는 결과, 가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관련 개별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도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나. 납세자의 선·악의와 관련된 문제점

우리 가산세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납세자가 행한 의무위반과 악의의 납세자가 행한 의무위반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도 악의의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9월 IMF 미션단의 지적도 우리나라의 가산세율이 너무 낮아 탈세행위를 유발할 여지가 크므로 이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어서,<sup>3)</sup> 중국적으로 악의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세분화하여 가산세를 중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관련 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의의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

---

3)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2006.

다. 특히 우리 조세범처벌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처벌수준이 가산세의 경우보다 높아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 가산세 감면사유와 관련된 문제점

현행 가산세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판례가 관련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즉 우리 판례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법과 판례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자에게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행 세법의 경우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제도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세목간 가산세 감면제도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사유’를 근간으로 하는 세법 공통의 가산세 감면사유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4)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판결 등.

### Ⅲ.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1. 미 국

##### 가. 개 관

미국의 경우 가산세란 보통 'civil penalty'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범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각 州가 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그 본질은 민사적인 것이다.<sup>5)</sup> 미국의 경우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sup>6)</sup>

미국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sup>7)</sup> ① 납세신고(tax return)를 하지 않는 경우, 25%를 한도로 5%의 가산세를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무신고 가산세)<sup>8)</sup> ② 부과된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25%를 한도로 매월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미납부 가산세)<sup>9)</sup> ③ 정확한 납세신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과 규칙에 대한 과실 혹은 간과(부주의), 소득세에 대한 중대한 과소신고, 평가에 대한 중대한 허위신고 등에 의한 과소납부액의 20%에 대한 가산세가

5) 田中英夫 編, 『英米法辞典』, 東京大学 出版部, 1991, p. 147. 따라서 형사적 제재인 '벌금(fine)'과는 구별된다.

6)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Search the United States Code*, (<http://uscode.house.gov/search/criteria.shtml>), [Cited 2006. 7. 20.]. 이하에서 언급되는 IRC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미국 의회)를 참조함.

7) Thomas R. Pope, *Federal taxation 2006: principles*, Principles 1-27 (2006).

8) IRC, Sec. 6651(a)(1). 이 제재(penalty assessed)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순납세액에 대해 가산금(penalties)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고액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다(T. Pope, *Ibid.*, *supra* note 36, at Principle 1-27). 이 비율은 가산금이 IRC, Sec. 6651(f)에 따라 신고에 사기적인 불이행(fraudulent failure)이 있으면 75%를 한도로 매월 15%까지 늘어난다.

9) IRC, Sec. 6651(a)(2). 만일 무신고 가산세 5%와 미납 가산세 0.5%가 모두 적용되면,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 가산세에 의해 감축된다(IRC, Sec. 6651(c)(1)). 여기에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재산(assets)에 대해 압류할 것을 고지하고 난 후에는 가산세가 매월 1% 늘어난다. T. pope, *Ibid.*, *supra* note 37, at Principle 1-27.

부과되는 경우(정확성 관련 가산세)<sup>10)</sup> ④ 사기(fraud)에 대해 7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민사 사기행위에 대한 증가산세)<sup>11)</sup> ⑤ 추정세금의 과소신고에 대한 실세금리(current interest rate)에 기초한 가산세(추정세금 과소신고 가산세)<sup>12)</sup> ⑥ 정보보고(報告)불성실 가산세<sup>13)</sup>로 대별된다.<sup>14)</sup>

미국의 경우 세금의 연체 이외 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민사처벌과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납세자가 회계나 신고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후자는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된다. 민사상 처벌에 대해서는 납세가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성실성(good faith)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 이를 신고서에서 미리 밝혀 두어야 한다(disclosure requirement). 가산세는 주로 체납과 추정세액의 부족한 납부로 발생한다. 이외 결제가 되지 않는 악성 수표나 사기 및 과실의 경우 가산세가 많지 않다. 또한 가산세는 신원 미확인이나 소득 미신고 등 세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기도 한다.<sup>15)</sup>

이와 같은 개괄적인 내용을 전제로 미국의 가산세제도를 미국 세법(IRC)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내 용

### 1) 무신고 가산세

법정기한 내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본세(순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신고세액의 5%를 본세(순세액)에 가산하되, 최대 25%를 한도로 한다. 다만 무신고

10) IRC. Sec. 6662.

11) IRC. Sec. 6663.

12) IRC. Sec. 6654.

13) IRC. Sec. 6721.

14) 미국의 각종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는 <부표 1> 참조.

1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 102.

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sup>16)</sup> 여기서 본세(순세액)는 총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법정기한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sup>17)</sup>

미신고가 사기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신고세액의 15%를 본세에 가산하되, 최대 75%를 한도로 한다(사기에 의한 증가산세).<sup>18)</sup> 이 경우도 미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기에 의한 증가산세와 관련하여, 증가산세 도입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즉, 사기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의해 추정되는데, *Spies v. United States*, 317 US 492 (1943) 판결에서는 ① 이중장부(double set of books) ② 허위기록·허위송장과 허위문서 작성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자산은닉과 소득원천의 은폐 ⑤ 상거래나 계약 등에 있어서 통상적(정상적)인 기록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affairs)의 조작(handling) 등을 상황적 증거로 보고 있다.<sup>19)</sup> 그리고 통상 사기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① 소득의 과소표시. 다만 소득의 과소표시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행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나, 소득의 과소표시 행태가 수년간에 걸쳐 행해졌다면 그러한 행위는 고의적이라고 보게 된다. ② 공제액을 부당하게 과대표시하는 것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는 소득의 원천을 은닉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 금융기관에 비밀계좌나 차명계좌를 갖는 것 등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④ 의도적으로(deliberate) 적정한 기장과 기록을 하지 않는 것 ⑤ 사건 조사시의 거짓행동(misleading conduct), 즉 조사공무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포탈의 의도가 인정되는 것이다.<sup>20)</sup> 기록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조사공무원을 방해하는 것

16) IRC. Sec. 6651(a)(1).

17) IRC. Sec. 6651(b)(1).

18) IRC. Sec. 6651(f).

19) Michael I. Saltman, *IRS Practice and Procedure*, Boston New York: Warren, Gorham & Lamont, 1981, pp. 758~760. 재인용: 유시권 외, 『국세행정의 개혁방안(Ⅰ)』, 한국조세연구원, 1994, p. 220.

20) *United States v. Beacon Brass Co.*, 344 US 513 (1942).

도 사기행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sup>21)</sup> 그런데 가산세상의 사기사건에 있어서는 조세포탈의 기소사건에서보다 납세자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그 교육수준이나 성장배경 등의 요소를 더욱 고려한다고 한다. 따라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장부를 기록할 지식이 없거나 또는 신고의무가 있음을 모른 것 같은 경우 그 자의 개인적인 조건을 더욱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sup>22)</sup>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숙련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장부 또는 기록의 미제출 또는 제출거부는 사기의 증거가 된다.<sup>23)</sup> 그리고 동일한 사실에 대한 형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절차는 이를 따른다.<sup>24)</sup>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최소한의 벌금이 적용되어 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와 1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된다(minimum penalty).<sup>25)</sup>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에서 면제되며 합리적 사유를 증빙한 납세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산세가 납부되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기일로부터 납부기일까지 이자가 붙는다.<sup>26)</sup>

## 2) 미납부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본세에 대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세액의 0.5%를 본세에 가산하되, 최대 25%를 한도로 한다.<sup>27)</sup> 이 경우도 무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28)</sup> 여기서 미납부세액이라고

21) Loren R. Gajewskie, 67 TC 181 (1976).

22) First Trust & Sav. Bank v. United States, 206 F. 2d 97 (8th Cir. 1953).

23) Fred N. Acker, 26 TC 107 (1956).

2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시권, 앞의 자료, pp. 220~221 참조.

25) IRC. Sec. 6651(a)(3).

26) IRC. Sec. 6601(e)(2)(B).

27) 즉, 매월 과소납부액의 0.5%가 가산된다.

28) IRC. Sec. 6651(a)(2).

함은 기납부된 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sup>29)</sup>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신고기일에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기일을 연장한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를 연기받은 납세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총납세의무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sup>30)</sup>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고지하고 10일이 경과한 날과 국세청이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납부를 요청한 날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는 0.5%의 가산세가 매월 1%로 증가한다.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가 미납에 따른 벌금보다 10배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많은 경우 세금 무신고와 미납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따른 가산세는 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에서 미납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무신고 4.5% 그리고 미납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sup>31)</sup>

사기행위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에 기한 과소납부부분의 75%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sup>32)</sup> 다만 과소납부액 중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부분과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acted in good faith)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33)</sup>

### 3) 정확성 관련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로 세액을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과소납부된 세액의 20%를 정확성 관련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sup>34)</sup>

- (1) 법규정 준수에 대한 태만, 부주의, 무분별, 고의적인 법령의 경시의 경우.

---

29) IRC. Sec. 6651(b)(1).

30) CFR, Sec. 301.6651-1(c)(3).

31) IRC. Sec. 6651(c)(1).

32) IRC. Sec. 6663(a).

33) IRC. Sec. 6664(c).

34) IRC. Sec. 6662.

- (2) 多額(과소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것과 5,000달러 중 큰 금액)의 소득세 과소신고의 경우.
- (3) 자산을 과대평가(정당한 평가액의 2배 이상)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5,000달러를 초과하는 세액을 과소납부하는 경우. 여기서 과대평가라고 함은 정당한 평가액의 200% 이상 등을 말한다.<sup>35)</sup> 과대평가액을 허위신고함으로써 과소납부된 세액이 5,000달러(법인의 경우에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 (4) 年金 납부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즉, 연금부담신고액이 공제할 정당한 연금부담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과다신고로 인하여 미달납부하는 세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가산세를 부과한다.<sup>36)</sup>
- (5) 상속·증여세의 과세평가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즉, 상속·증여세신고서상의 평가액이 정당한 과세평가액의 50% 이하인 경우로서 이로 인한 미납세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부과된다.<sup>37)</sup>

이상의 미납세액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분이나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sup>38)</sup> 그러나 위의 민사 사기행위에 의한 증가산세<sup>39)</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sup>40)</sup>

IRC에 의하면 신고세액의 10%나 5,000달러(정규 C 주식회사는 10,000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으로 간주한다.<sup>41)</sup> 이에 대한 가산세는 결손액의 20%이다.

---

35) IRC. Sec. 6662(e).

36) IRC. Sec. 6662(f).

37) IRC. Sec. 6662(g).

38) IRC. Sec. 6664(c).

39) IRC. Sec. 6663.

40) IRC. Sec. 6662(b).

41) IRC. Sec. 6662(d)(1).

#### 4) 민사 사기행위(fraud)에 대한 증가산세

사기행위(fraud)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에 기한 과소납부분의 75%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sup>42)</sup> 다만 합산신고(joint return)<sup>43)</sup>의 경우, 미납세액의 일정 부분이 어느 배우자의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 아닐 경우 이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sup>44)</sup>

사기로 간주되는 행위로는, ① 이중장부 ② 허위기록, 허위송장, 허위문서의 작성(예, 소득의 과소표시를 수년간에 걸쳐 행하는 것) ③ 장부와 기록의 파괴 ④ 자산의 은닉과 소득원천의 은폐(예, 금융기관에 비밀 계좌를 갖는 것) ⑤ 상거래나 계약 등에 있어서 통상적(정상적)인 기록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affairs)의 조작(handling) ⑥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 행하는 그릇된 행동(예, 조사공무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sup>45)</sup>

과세당국이 미납부세액 중 일부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미납부세액 전부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사기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46)</sup> 또한 과소납부세액 중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부분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47)</sup>

고의적으로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자료의 위조나 파괴 등을 동반한 체계적이거나 상당한 소득의 누락 또는 가공의 공제 등은 사기행위(fraud)로 간주되

42) IRC. Sec. 6663(a).

43) 이는 '가족세무신고'라고도 하는데, 부부의 수입을 합산한 소득세 종합신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각각의 배우자가 보고된 소득액에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납세 부담 능력을 추정케 하는 기능을 한다. joint return은 일방 배우자가 타당 배우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실익이 있는 제도로서,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각각 분리하여 수익과 세금공제를 기록한 것과 관련된 것을 분리보고(separate return)라고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양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IRC. Sec. 6663(c).

45) 손광락, 앞의 자료, p. 37~38.

46) IRC. Sec. 6663(b).

47) IRC. Sec. 6664(c).

어 이에 따른 결손액의 7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이자도 붙는다.<sup>48)</sup> 결손액의 일부가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납세자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손액 전부가 사기행위로 인한 금액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소득, 상속 및 증여세에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등에 의한 다른 가벼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추정세금 과소신고 가산세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가산세는 IRC. Sec. 6621에 따라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를 부과한다.<sup>49)</sup> 그러나 추정세의 분기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그 대신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이자가 붙는다.<sup>50)</sup>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각 분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금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밖에 납세자의 세금이 원천징수분을 1,000달러 이하로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장애인 그리고 새로 은퇴한 납세자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sup>51)</sup>

### 6) 정보보고(報告)불성실 가산세

IRC는 Sec. 6031부터 Sec. 6052까지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과세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고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sup>52)</sup> 즉 법정기일(대개는 2월 28일이 보통임)까지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그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고서에 부당한 정보를 포함시킨

48) IRC. Sec. 6663.

49) 개인의 경우에는 IRC. Sec. 6654, 법인의 경우에는 IRC. Sec. 6655.

50) IRC. Sec. 6601(h).

51) IRC. Sec. 6654(e).

52) IRC. Sec. 6721.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 매건마다 50달러의 정액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보고의무자 기준으로 연간 2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sup>53)</sup> 법정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법정기한 후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매건 보고서마다 15달러로 경감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7만 5천달러를 넘을 수 없다.<sup>54)</sup>

법정기일 이후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에는 매건 보고서마다 3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15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sup>55)</sup>

이상의 경우들 이외에는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그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표 III-1〉 미국의 각종 가산세

유형	내용
무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한 내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본세(순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 매월 미신고세액의 5%를 본세(순세액)에 가산하되, 최대 25%를 한도로 함(Sec. 6651(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무신고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li> </ul> </li> <li>○ 여기서 본세(순세액)는 총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법정기한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Sec. 6651(b)(1)).</li> <li>○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최소한의 벌금(minimum penalty)이 적용되어 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와 1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됨(Sec. 6651(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도 미신고가 정당한 사유이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li> </ul> </li> <li>○ 사기에 의한 증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가 사기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매월 미신고세액의 15%를 본세에 가산하되, 최대 75%를 한도로 함(Sec. 6651(f)).</li> </ul> </li> </ul>

53) IRC. Sec. 6721(a)(1).

54) IRC. Sec. 6721(b)(1).

55) IRC. Sec. 6721(b)(2).

〈표 III-1〉의 계속

유 형	내 용
	<p>- 이 경우도 미신고가 정당한 사유이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p>
미납부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자진신고세액 혹은 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과소납부세액의 0.5%가 부과됨(Sec. 6651(a)(2)).</li> <li>- 다만 미납부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li> <li>○ 여기서 미납부세액이란 기납부된 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Sec. 6651(b)(1)).</li> <li>○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신고기일에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기일을 연장한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li> <li>- 다만 신고를 연기받은 납세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총납세의무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CFR, Sec. 301.6651-1(c)(3)).</li> <li>○ 사기에 의한 증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행위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에 기한 과소납부 부분의 75%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Sec. 6663(a)).</li> <li>- 다만 과소납부액 중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부분과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acted in good faith)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Sec. 6664(c)).</li> </ul> </li> </ul>
정확성 관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로 세액을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과소납부된 세액의 20%를 정확성 관련 가산세로 부과(Sec. 6662).</li> <li>(1) 법규정 준수에 대한 태만, 부주의, 무분별, 고의적인 법령의 경시의 경우.</li> <li>(2) 多額(과소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것과 5,000달러 중 큰 금액)의 소득세 과소신고의 경우.</li> <li>(3) 자산을 과대평가(정당한 평가액의 2배 이상)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5,000달러를 초과하는 세액을 과소납부하는 경우. 여기서 과대평가란 정당한 평가액의 200% 이상 등을 말함(Sec. 6662(e)). 과대평가액을 허위신고함으로써 인하여 과소납부된 세액이 5,000달러(법인의 경우에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가산세를 부과.</li> <li>(4) 年金 납부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즉 연금부담신고액이 공제할 정당한 연금부담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과다신고로 인하여 미달 납부하는 세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가산세를 부과(Sec. 6662(f)).</li> <li>(5) 상속·증여세의 과세평가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즉 상속·증여세신고서상의 평가액이 정당한 과세평가액의 50% 이하인 경우로서 이로 인</li> </ul>

## 〈표 III-1〉의 계속

유 형	내 용
정확성 관련 가산세	<p>한 미납세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부과(Sec. 6662(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의 미납세액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분이나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Sec. 6664(c)).</li> <li>○ 사기행위에 의한 증가산세(IRC. Sec. 66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Sec. 6662(b)).</li> <li>○ IRC에 의하면 신고세액의 10%나 5,000달러(정규 C 주식회사는 1만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의 증대한 누락으로 간주(Sec. 6662(d)(1)). 이에 대한 가산세는 결손액의 20%.</li> </ul>
민사사기 행위에 대한 증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행위(fraud)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에 기한 과소납부 부분의 75%만큼 가산세를 부과(Sec. 666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합산신고(joint return)의 경우, 미납세액의 일정 부분이 어느 배우자의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 아닐 경우 이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음(Sec. 6663(c)).</li> </ul> </li> <li>○ 과세당국이 미납부세액 중 일부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미납부세액 전부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됨(Sec. 666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납세자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사기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li> </ul> </li> <li>○ 과소납부세액 중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부분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Sec. 6664(c)).</li> </ul>
추정세금 과소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개인의 경우에는 IRC. Sec. 6654, 법인의 경우에는 IRC. Sec. 6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가산세는 Sec. 6621에 따라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를 부과.</li> <li>- 그러나 추정세의 분기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그 대신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이자가 부과(IRC. Sec. 6601(h)).</li> </ul> </li> <li>○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각 분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금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li> <li>○ 이 밖에 납세자의 세금이 원천징수분을 1,000달러 이하로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장애인 그리고 새로이 은퇴한 납세자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음(Sec. 6654(e)).</li> </ul>

〈표 III-1〉의 계속

유 형	내 용
정보보고 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일(대개는 2월 28일이 보통임)까지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고서에 부당한 정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 매건마다 50달러의 정액가산세가 부과(Sec. 6721(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가산세는 보고의무자 기준으로 연간 2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법정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법정기한 후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매건 보고서마다 15달러로 경감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7만 5천달러를 넘을 수 없음(Sec. 6721(b)(1)).</li> <li>○ 법정기한 이후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에는 매건 보고서마다 3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15만달러를 넘을 수 없음(Sec. 6721(b)(2)).</li> <li>○ 이상의 경우들 이외에는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그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됨.</li> </ul>

## 2. 일 본

### 가. 개 관

탈세에 대한 처벌로서 일본에는 가산세제도와 조세형벌제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가산세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國稅通則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형벌제도에 대해서는 단행법이 아닌 각 세목에 관한 법률에서 그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항에서는 일본의 가산세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sup>56)</sup>

일본의 경우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연체세, 이자세도 모두 가산세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부대세(附帶稅)라고 한다. 가산세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56) 일본의 각종 가산세제도에 대해서는 〈부표 2〉 참조.

제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연체세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자세는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57)</sup>

## 나. 내 용

### 1) 가산세

가산세는 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나 급여 등의 지불자가 원천징수 등의 징수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국세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부담하는 부대세이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불납부가산세 및 해당 가산세를 대신하여 과세되는 증가산세의 4종류가 있다. 소비세제에 대해서는 증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up>58)</sup>

#### 가)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① 기한 내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② 환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③ 기한 후 신고서가 제출된 때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있었던 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나 경정에 기초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정을 알지 못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통칙법 제65조 제4항 내지 제5항).

57) 참고로 지방세의 부대세에 대해서는 市町村稅務研究會 編, 「要說 住民稅」(平成 17年度版), ぎょうせい, 平成17[2005], p. 244, pp. 268~269 참조.

58) 羽沁成樹 編, 「図說 日本の税制」(平成17年度版), 財経詳報社, 2005, p. 208.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된 세액과 수정신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추가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기한 내 신고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50만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동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

#### 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①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및 결정이 있었던 경우 ②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및 결정이 있었던 후에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결정이 있었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납부세액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다(동법 제66조 제1항).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은 15%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결정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동법 제66조 제1항 내지 제2항).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법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자주적으로 행하는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인 5%를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신고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납부할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20%로 인상했다.<sup>59)</sup>

#### 다) 불납부가산세

원천징수 등에 따라 징수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국세가 그 법정기간 내에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법정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다(동법 제67조 제1항).

원천징수 등에 대한 국세가 그 법정기간까지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율은

59) 日本 財務省 홈 페이지(<http://mof.go.jp>)의 平成18[2006] 税制改正 참조. 平成19[2007] 1월 1일 법정신고기부부터 적용.

10%이며 납세고지를 알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동법 제66조 제2항).

## 라) 증가산세

증가산세는 상기의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어지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정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각각의 가산세에 대신하여 일정한 비율로 과세되는 것이다.<sup>60)</sup>

과소신고가산세에 대신하여 증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가산세율은 35%, 무신고가산세에 대신하여 증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가산세율은 40%, 불납가산세에 대신하여 증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가산세율은 35%이다(동법 제68조).

## 2) 연체세

연체세는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한 내에 적정하게 국세를 납부한 자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간에 균형을 꾀하고자 납부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동법 제60조). 연체세는 특별한 확정절차 없이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세방식이나 부과납세방식 모두에서 기한내에 적정하게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세가 부과된다.<sup>61)</sup>

연체세의 계산은 법정납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그 국세를 완납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액에 대해 연 14.6%로 계산한다. 단,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연 7.3%로 하고 있다. 이 때 가산율 7.3%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년 11월 30일 현재의 공정보합에 4%를 가산한 율이 7.3%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국

60) 羽沁成樹 編, 前掲書, p. 208.

61) 川田 剛, 『やさしい国税通則法』(平成17年度版), 大蔵財務協会, 平成17[2005], p. 134.

세에 대해서 기한내 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수정신고를 제출한 날 및 경정통지서를 발행한 날까지의 기간은 연체세의 계산기간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1조 제1항).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에 대해서도 공제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61조 제2항). 이 때, 무신고나 증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1조). 이 규정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굳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액의 연체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세무서의 행정처리에 따른 시기가 납세자별 차이와 같이 납세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경제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에 따른 제도이다.

### 3) 이자세

이자세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납제도와 더불어 법인세에 대한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연납세액이나 기한연장에 따른 확정신고세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대세이다(동법 제64조 제1항). 연체세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자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며 이자세의 계산기간에는 연체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sup>62)</sup>

이자세의 가산율은 법정납기일의 다음날부터 연납 및 연장기간중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 7.3%(소득세법 제131조의 제3항 및 제136조, 법인세법 제75조 제7항)이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따라 연 1.2%에서 연 6.6%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속세법 52조 제1항,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11).

62) 羽沁成樹 編, 前掲書, p. 208.

〈표 III-2〉 일본의 부대세(가산세를 중심으로)

종 류	적용요건	세 액	비 고	
가 산 세	과소 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소한 경우	증가세액의 10% 단, 증가세액이 기한내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세액의 15%	경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정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함.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납부세액의 15% 단,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5%	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함(2007년 이후 개정은 본문참고).
	불납부 가산세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액의 10% 단, 납세고지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5%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함.
증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은폐나 가장이 있는 경우	증가세액의 35%	상기의 가산세를 대신하여 부과됨(중복 과세되지 않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은폐나 가장이 있는 경우	법정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40%		
	불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은폐나 가장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5%		
연체세	납부해야만 하는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연 14.6% (단,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연 7.3% <sup>1)</sup> )	신고납부방식 및 원천징수방식은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제출 후 1년까지는 연체세의 계산기간에서 공제. 단, 무신고나 증가산세 적용대상은 공제규정 없음.	
이자세	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이 인정된 경우	법인세, 소득세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 7.3%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 따라 연 1.2%~6.6% <sup>2)</sup>	이자세계산기간에는 연체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1) 공정보합(일본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업어음에 대하여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할인율)에 연 4%를 가산한 이자율이 연 7.3%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2) 법인세에 대해서는 공정보합이 5.5%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이자율이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공정보합이 0.5%인 경우에 2.2%~4.0%의 이자율.

자료: 이자세 부분은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3. 독일

#### 가. 개 관

독일의 가산세제도는 국세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 國稅基本法(Abgabenordnung, AO)에 관련 규정이 있다.<sup>63)</sup> 독일 국세기본법은 독일 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서, 이번 항에서는 이 법률을 중심으로 독일의 가산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독일의 가산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부과의 원칙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의 계산과 부과에 대한 원칙을 포함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나. 내 용<sup>64)</sup>

##### 1) 이자의 부과

###### 가) 부과의 원칙

독일의 경우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sup>65)</sup>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에 부과되는 부수적인 급부 및 이에 대응한 환급청구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66)</sup>

###### 나) 이자계산기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영업세의 확정으로 조세나 조세환급액이

63) Recht-in.de, <<http://www.recht-in.de/>>, [Cited 2006. 7. 20.]. 이하에서 언급되는 독일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를 참조함.

64) 이하의 내용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부표 4> 참조.

65) § 37 AO.

66) § 233 AO.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 56.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이자를 부과한다. 즉, 조세를 초과지불하였거나 환급에 대한 이자율은 1개월 0.5%(1년에 6%)이고, 이자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15개월 후부터 시작된다.<sup>67)</sup> 예를 들어 2004년의 추가지급이나 환급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2006년 3월 31일 이후에 시작된다. 이자의 계산기간은 조세부과의 시효의 만기일로 종료된다.<sup>68)</sup> 이자산정에 대한 기준은 확정된 조세에서 계상될 조세감면액, 계상될 법인세 및 확정된 조세예납(차액)을 감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는 이자계산에 대한 차액으로서 확정조세에서 확정된 조세예납 또는 현재까지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개시한다.<sup>69)</sup>

이자의 계산은 이자를 붙일 각 세목별 세액이 50유로 이하이면 이를 절삭한다.<sup>70)</sup>

#### 다)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

1개월에 0.5%(1년에 6%상당)의 이자를 다음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① 조세의 지불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불연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것에 의하여 조세의 납부가 연기된 경우.<sup>71)</sup>

② 조세의 납부가 납세자를 위한 극단적인 곤란 때문에 연기된 경우.<sup>72)</sup>

③ 조세가 탈루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의 이자는 조세를 감소시킨 날로부터 기산된다.<sup>73)</sup> 여기서 이자채무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세채무자 이외의 자가 원천징수한 조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 또는 제3자가 부담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가 이자채무자가 된다.<sup>74)</sup> 이자기간은 탈세의 발생 또는 조세상의 이익 획득일에 시작한다.<sup>75)</sup> 이자기간은 탈루된 세액의 납부일로 종료된다.<sup>76)</sup>

67) § 233a AO.

68) § 233a Abs. 2. AO.

69) § 233a Abs. 3. AO.

70) § 238 Abs. 2. AO.

71) § 237 AO.

72) § 234 AO.

73) § 235 AO.

74) 김유찬, 앞의 책, p. 57.

## 라) 미납부 가산세

조세가 납부기한의 만료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가 납부되어질 때까지 1개월당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2) 가산세

## 가) 신고불성실의 경우

세무신고가 납기일 이후에 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최대 25,000유로와 함께 추정세액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2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당국은 추정예상세액을 통지할 수 있다.<sup>75)</sup>

## 나) 납부불성실의 경우

법정기한의 만료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그것이 납부되어질 때까지 매일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sup>76)</sup> 이는 상환할 조세환급금과 귀속책임에 의한 채무(Haftungsschulden)에 대해서도 같다. 다만 이와 같은 가산세는 조세가 확정되거나 또는 신고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 또는 조세상환의 확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시까지 발생한 연체가산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sup>77)</sup> 그러나 연체가산세는 조세의 부수적인 급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sup>78)</sup> 연체가산세는 5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sup>81)</sup>

---

75) § 235 Abs. 2. AO.

76) § 235 Abs. 3. AO.

77)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78) § 240 AO.

79) § 240 Abs. 1. AO.

80) § 240 Abs. 2. AO.

연대채무의 경우 연체가산세는 연체한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지만 그 총액은 1인의 연대채무자의 연체에 관한 경우에 발생한 연체가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sup>82)</sup>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해진다.

①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과세신고를 하여 탈세(tax fraud)를 하거나 고의로 과세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0,000유로 이하의 벌금(fine)이나 5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② 중대한 탈세나(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official)을 개입시킨 탈세의 경우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③ 위 ①과 같이 세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부주의(negligence)를 행한 경우 벌금(fine)은 50,000유로까지 부과된다.<sup>83)</sup>

〈표 III-3〉 독일의 가산세

이자의 부과 1개월에 0.5% (1년에 6%상당)의 이자를 부과	① 조세의 지불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불연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것에 의하여 조세의 납부가 연기된 경우. ② 조세의 납부가 납세자를 위한 극단적인 곤란 때문에 연기된 경우. ③ 조세가 탈루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의 이자는 조세를 감소시킨 날로부터 기산.
미납부 가산세	조세가 납부기한의 만료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가 납부되어질 때까지 1개월당 1%의 가산금을 부과.
신고불성실의 경우	○ 세무신고가 납기일 이후에 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최대 25,000유로와 함께 추정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과세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2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당국은 추정예상세액을 통지.
납부불성실의 경우	○ 법정기한의 만료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그것이 납부되어질 때까지 매월 1%의 가산세를 부과. ○ 이는 상환할 조세환급금과 귀속책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도 같음. ○ 다만 이와 같은 가산세는 조세가 확정되거나 또는 신고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음. ○ 연대채무의 경우 연체가산세는 연체한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지만 그 총액은 1인의 연대채무자의 연체에 관한 경우에 발생한 연체가산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81) § 240 Abs. 3. AO.

82) § 240 Abs. 4. AO.

83)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 4. 프랑스

### 가. 개 관

프랑스의 경우 조세법체계는 크게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과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LPF)으로 대별되는데, 조세일반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법들이 각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프랑스의 조세법체계는 이와 같이 단일법체계이고, 가산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租稅實體法(CGI)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과세관청은 징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고, 본세에 덧붙여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가 추가 징수된다. 이는 미납부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으면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처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가격'과 같은 성질이 있다. 다만, 납세자가 현저하게 조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미납가산세에 덧붙여 조세회피의 금액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이 요구된다.

한편 가산세의 성질 및 부과 동기는 세금의 징수에 앞서 납세자에게 통지되는데, 납세자의 선의가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서는 앞서 설명한 본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같은 가산세의 적용은 적어도 주임조사관(서기관)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및 가산세 부과 이유를 발견한 조사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sup>84)</sup>

### 나. 프랑스 가산세제도의 특징

프랑스 가산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가산세제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84)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 82~83.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산세 규정의 전제가 “모두가 다 탈세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의의 납세자가 무지 또는 실수로 누락된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프랑스와 같은 조세감면신청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탕감해주는 반면, 악의의 납세자에게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sup>85)</sup>

## 다. 내 용<sup>86)</sup>

### 1)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는 매월마다 0.40%가 부과된다. 그 10%의 가산세는 처음의 부과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40%까지 증가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 80%까지 가산된다.<sup>87)</sup>

### 2) 과소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납세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신고에 영향을 준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선의(good faith)<sup>88)</sup>에 의한 것일 경우 0.40%의 지연납부이자 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악의(bad faith)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에 대해 부과되는) 40%의 가산세(penalty)가 추가된다. 이 가산세는 사기(fraud)의 경우 80%로 증대된다.

85)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p. 125.

86)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표 5> 참조.

87) Arts. 1727 and 1728 CGI.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88) 이는 법률상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40% 혹은 80%의 가산세는 과세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최종 과세표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sup>89)</sup> 납세자가 신고되지 않은 세목들에 대해 열거한 특별증서(special note)를 작성하고 그 무신고에 대해 상세히 그 이유를 기술하면 가산세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sup>90)</sup>

### 3) 무납부 또는 지연납부의 경우

소득세나 지방세의 무납부나 지연납부의 경우 지연가산세(lateness penalty)로 그 납세액의 10%까지 부과된다.<sup>91)</sup> 다른 세액의 지연납부(예컨대 인지세, 등록세, 원천징수세 등)의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더해진 매월 0.40%의 이자가 부과된다.<sup>92)</sup>

### 4) 조세범에 해당될 경우

임의적인 탈세(tax evasion[fraud])는 형사범으로서, 그 제재(penalty)는 37,500 유로의 벌금(fine) 그리고/혹은 5년 이하의 금고(prison)에 처한다.<sup>93)</sup> 여기에 더해 형사법원(criminal court)은 납세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3년까지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94)</sup> 또한 동 법원은 납세자가 공공계약(public contracts)을 체결하는 것을 10년까지 금하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벌금(fine)은 100,000유로까지 그리고 금고(prison)는 10년까지 증가될 수 있다.<sup>95)</sup>

89) Art. 1729 CGI,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90) Art. 1727 CGI.

91) Art. 1730 CGI.

92) Art. 1731 CGI.

93) Art. 1741 CGI.

94) Art. 1750 CGI.

95)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 5) 기타: 가산세 감면신청

프랑스의 경우 조세감면신청의 하나로서 가산세 감면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감면신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조세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sup>96)</sup> 조세감면신청은 해당 조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과세가 이루어진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는 모든 조세의 가산세에 대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 대해 과세권자는 상호합의(transaction), 경감(remise) 또는 완화(moderation)의 결정을 한다.

〈표 III-4〉 프랑스의 가산세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는 매월마다 0.40%가 부과.</li> <li>○ 그 10%의 가산세는 처음의 부과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40%까지 증가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 80%까지 가산.</li> </ul>
과소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납세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신고에 영향을 준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선의(good faith)에 의한 것일 경우 0.40%의 지연납부이자가 부과.</li> <li>○ 납세자가 악의(bad faith)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에 대해 부과되는) 40%의 가산세(penalty)가 추가됨. 이 가산세는 사기(fraud)의 경우 80%로 증대.</li> <li>○ 이와 같은 추가적인 40% 혹은 80%의 가산금은 과세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최종 과세표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li> <li>○ 납세자가 신고되지 않은 세목들에 대해 열거한 특별증서(special note)를 작성하고 그 무신고에 대해 상세히 그 이유를 기술하면 가산세나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li> </ul>
무납부 또는 지연납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나 지방세의 무납부나 지연납부의 경우 지연가산세로 그 납세액의 10%까지 부과.</li> <li>○ 다른 세액의 지연납부(예컨대 인지세, 등록세, 원천징수세 등) 5%의 가산세가 더해진 매월 0.40%의 이자가 부과.</li> </ul>
조세법에 해당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적인 탈세는 형사범으로서, 그 제재(penalty)는 37,500 유로의 벌금(fine) 그리고/혹은 5년 이하의 금고(prison)에 처함.</li> <li>○ 여기에 더해 형사법원(criminal court)은 납세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3년까지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li> <li>○ 또한 동 법원은 납세자가 공공계약(public contracts)을 체결하는 것을 10년까지 금하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벌금(fine)은 100,000유로까지 그리고 금고(prison)는 10년까지 증가될 수 있음.</li> </ul>

96)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pp. 102~103.

## 5. 영 국

### 가. 개 관

영국의 경우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직접세의 조세절차와 조세쟁송에 대한 법률인 租稅管理法(Taxes Management Act, TMA)에서 가산세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sup>97)</sup> 따라서 이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경우를 나누어 가산세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내 용

#### 1) 개인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신고에 있어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적게 신고하는지, 혹은 납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대응한다. 세무당국은 대부분의 금전거래(monetary settlement)의 종류와 그 영향을 철저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한 사기(fraud)가 의심되는 대규모의 보다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숫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부서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형사절차에 대한 소 제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금전거래(monetary settlement)에 대한 것이다.<sup>98)</sup>

이러한 금전거래는 보통 지연납세에 대한 가산세나 이자(세)로 연결된다. 최고의 제재는 미신고 세액의 비율만큼까지도 부과된다(예컨대 부정확한 신고 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100%까지).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부과된 실질적인 제재(penalty)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그 한도에 대해

97) J. Philip Hardman & Andrew Park, "Taxes Management Act 1970", 1992~93 *Tax Statutes and Statutory Instruments*, Chicago: CCH, 1993, p. 426 이하.

98)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서는 범위반자의 제안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수용 내지는 불수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① 범위반자의 임의적인 진술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러한 임의적인 진술은 국세청의 혜택 부여의 정도에 반영되는 것이다. ② 성실성(gravity). 이는 곧 1,000파운드 혹은 그 이상의 조세 감면으로 이어진다. ③ 국세청의 조사에 대한 범위반자의 협력. 추가적으로,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의 다양한 종류의 불이행 또는 법정기한보다 늦은 신고에 대한 제재(penalty)가 규정되어 있다.<sup>99)</sup>

이자의 경우 지연납세(late-paid tax)에 대해 유효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반대로, 이자는 과납된 세금의 환급에도 적용되나, 이는 낮은 이율을 따르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6~97년부터는 이자에 더해, 납세가 기한보다 28일 이상 지연될 경우 (임시가 아닌) 최종세액에 대해 5%의 추징금(surcharge)이 부과되고, 납부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는 10%까지 오른다. 국세청과 범위반자 사이에 금전의 양도가 있거나, 국세청에 의한 제재(penalty)의 부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sup>100)</sup>

세무공무원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101)</sup> 그리고 이 지정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파운드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sup>102)</sup> 자동가산세(automatic penalties)는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 system)하에서 납세신고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1월 31일 이후에 제출되면 100파운드, 7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100파운드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러한 제재는 미지급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더해 추가액이 더해진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그의 납세신고의 제출에 대한 불이행이 지속되면 매일 60파운드의 제재(penalty)가 부과되도록 소추할 수 있다.<sup>103)</sup>

99)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100)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101) TMA. Sec. 8.

102) TMA. Sec. 93(2). Colin Davis, *Taxes Management Act: a practical guide to compliance, penalties and powers*, Longman, 1994, p. 35.

## 2) 법인의 경우

납세자의 사기(fraud)나 부주의(neglect)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납세 신고의 제출에 대한 의무를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penalty fine)이 미납된 세액만큼 일반심판관(the general commissioner)에 의해 법위반자에게 부과된다. 국세청은 일반심판관에게 이 문제가 넘어가기 전에 납세자와 벌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적은 제재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① 조사관에게 임의로 불법을 시인한 경우 ②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은 뒤에 법위반에 대한 진술한 경우 ③ 납세의 상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관에게 협력한 경우 ④ 과실(culpability)이나 위험성(gravity)과 관련된 경우 등이다.<sup>104)</sup>

이상의 제재에 더해, 국고수입에 대한 사기(cheating)나 그 공모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부정확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납세에 대한 어떠한 정보의 준비나 전달을 도운 자는 3,000파운드를 넘지 않는 제재(penalty)에 처해진다.<sup>105)</sup> 또한 자기부과절차(self-assessment procedure) 하에서, 자기부과에 대한 몇몇 사정의 정확성이 불확실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불확실하거나 異論이 있는 관점들에 대해 가장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에 기초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sup>106)</sup>

103)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104)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105) TMA. Sec. 99.

106)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표 III-5〉 영국의 가산세

개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신고에 있어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적게 신고하는지, 혹은 납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대응.</li> <li>○ 국세청은 사기(fraud)가 의심되는 대규모의 보다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숫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부서를 두고 있음.</li> <li>○ 이 부서에서 다루는 금전거래는 보통 지연납세에 대한 가산세(penalty)나 이자(interest)로 연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의 제재는 미신고 세액의 비율만큼까지도 부과(예컨대 부정확한 신고 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100%까지).</li> <li>-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부과된 실질적인 가산세(penalty)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그 한도에 대해서는 범위반자의 제안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수용 내지는 불수용에 의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 ① 범위반자의 임의적인 진술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러한 임의적인 진술은 국세청의 혜택 부여의 정도에 반영. ② 성실성(gravity). 이는 곧 1,000파운드 혹은 백만파운드의 조세가 감면. ③ 국세청의 조사에 대한 범위반자의 협력. 추가적으로,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의 다양한 종류의 불이행 또는 법정기한보다 늦은 신고에 대한 제재(penalty)가 규정되어 있음.</li> </ul> </li> </ul> </li> <li>○ 이자의 경우 지연납세(late-paid tax)에 대해 유효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비율에 따라 부과. 반대로, 이자는 과납된 세금의 환급에도 적용되나, 이는 낮은 이율을 따르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음.</li> <li>○ 1996~97년부터는 이자에 더해, 납세가 기한보다 28일 이상 지연될 경우(임시가 아닌) 최종세액에 대해 5%의 추징금(surcharge)이 부과되고, 납부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는 10%까지 오름.</li> <li>○ 국세청과 범위반자 사이에 금전의 양도가 있거나, 국세청에 의한 제재(penalty)의 부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음.</li> <li>○ 세무공무원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정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파운드 이하의 가산세(penalty)가 부과.</li> <li>○ 자동 가산세(automatic penalties)는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 system)하에서 납세신고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1월 31일 이후에 제출되면 100파운드, 7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더해 100파운드가 추가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제재는 미지급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더해 추가액이 더해짐.</li> <li>-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그의 납세신고의 제출에 대한 불이행이 지속되면 매일 60파운드의 제재(penalty)가 부과되도록 소추할 수 있음.</li> </ul> </li> </ul>
--------	---

〈표 III-5〉의 계속

법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사기(fraud)나 부주의(neglect)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납세신고의 제출에 대한 의무를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penalty fine)이 미납된 세액만큼 일반 심판관(the general commissioner)에 의해 범위반자에게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은 일반 심판관에게 이 문제가 넘어가기 전에 납세자와 벌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li> <li>- 실제로는, 국세청이 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적은 제재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됨. ① 조사관에게 임의로 불법을 시인했는지 ②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은 뒤에 범위반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경우 ③ 납세의 상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관에게 협력한 경우, 그리고 ④ 과실(culpability)이나 위험성(gravity)의 경우 등.</li> </ul> </li> <li>○ 이상의 제재에 더해, 국고수입(Her Majesty The Queen and the Public Revenue)에 대한 사기(cheating)나 그 공모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음.</li> <li>○ 부정확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납세에 대한 어떠한 정보의 준비나 전달을 도운 자는 3,000파운드를 넘지 않는 제재(penalty)에 처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자기부과절차(self-assessment procedure)하에서, 자기부과에 대한 몇몇 사정의 정확성이 불확실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불확실하거나 異論이 있는 관점들에 대해 가장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에 기초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li> </ul> </li> </ul>
--------	--

## 6. 시사점 -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이상에서는 주요국의 가산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경우 가산세제도를 대개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같은 통칙적인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內國稅法(IRC)에,<sup>107)</sup> 일본의 경우는 國稅通則法에, 독일의 경우는 租稅基本法(AO)에, 프랑스의 경우는 租稅一般法(CGI)에, 영국의 경우에는 租稅管理法(TMA)에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칙적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가산세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정들을 두고,

107) 다만 미국의 경우 IRC가 다른 국가와 같이 기본법적 성질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가산세 관련규정이 통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세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고, 세법규정의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납부 여부와 정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산세제도는 납세자의 선·악의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조세범처벌법의 경우에는 악의의 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산세율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제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절충방안으로서 악의의 납세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하여 이를 정형화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인상하여 기존의 낮은 가산세율과 높은 조세범처벌수준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의 경우에는 주로 악의의 납세자 행위유형에 대해 주로 '사기'(詐欺, fraud)라는 하나의 유형만 법제화하고, 별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sup>108)</sup> 이러한 주요국의 법체계상의 특징이 우리 가산세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시사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납세자의 선·악의 특히 악의의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기본적인 유형만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기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가장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108) 다만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무신고 납세자의 악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자료의 미국의 가산세 부분 참조.

〈참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위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납세자의 악의에 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별규정을 신설하고, 가장 마지막 호에 이상의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두어서 납세자의 악의를 좀 더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의 법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악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 효용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9)</sup>

다만 이 경우에도 악의의 판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판단에는 “고의, 과실, 허위, 단순착오” 등 주관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이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sup>110)</sup>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 각 세법의 다른 추정규정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악의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이 법률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추정규정’의 신설

109) 또 하나의 좋은 예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와 같이 직접 기타 사항을 열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10) 앞에서 본 미국의 판례가 들고 있는 유형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유형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자료상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사업주의 횡령·사기 등.

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요국이 대부분 악의의 납세자에 대해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법률'의 차원에서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판례에 의해 납세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세부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즉, 주요국 모두 악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기'(詐欺, fraud)라는 상위개념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는 사기의 각 유형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그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형태를 법으로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측면도 우리의 입법에 참고가 되리라 본다.

가산세 감면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세법은 가산세 감면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과 판례와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가산세 내지는 중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거나 고의적인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성이 있는 입법례라고 판단된다. 즉, 우리 세법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등에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납세자에게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도 가산세율을 인상하여 악의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 사기 등에 의한 중가산세의 경우 세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의 가산세율이 비교적 낮다는 지적을 반증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악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오히려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납세의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IV. 결 론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이들 주요국들의 가산세제도는 해당국의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고, 제도도 큰 변화없이 안정적이어서 우리 가산세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들 나라들의 제도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우선 가산세제도에 대한 통칙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악의의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선의의 납세자에게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는 것과 맞물려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의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판례가 아닌 법률에 직접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악의의 납세자에 대해 유형별로 추정규정을 두는 방안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 형식이고, 추정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성의 문제도 제기가 될 여지가 있어 그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굳이 관련 규정을 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와 같은 형식의 규정을 두어 악의의 납세자의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고, 이에 더해 ‘악의의 일반규정’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 \_\_\_\_\_,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손광락,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유시권 외, 『국세행정의 개혁방안( I )』,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한상국 · 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川田 剛, 「やさしい國稅通則法」(平成17年度版), 東京: 大藏財務協會, 2005.
- 市町村稅務研究會 編, 「要說 住民稅」(平成 17年度版), 東京: きょうせい, 2005.
- 田中英夫 編, 「英米法辭典」, 東京: 東京大學 出版部, 1991.
- 羽沁成樹 編, 「圖說 日本の稅制」(平成17年度版), 東京: 財經詳報社, 2005.
- 日本 財務省, (<http://mof.go.jp/>), [Cited 2006. 7. 1.]
- Colin Davis, *Taxes Management Act: a practical guide to compliance, penalties and powers*, London: Longman, 1994.
- Foreman, A., *Tax handbook 1997-98: includes self-assessment*, Pitman Publishing, 1997.
- J. Philip Hardman & Andrew Park, "Taxes Management Act 1970," 1992~93 *Tax Statutes and Statutory Instruments*, Chicago: CCH, 1993.
- Pope, Thomas R., *Federal taxation 2004: comprehensive*, Prentice Hall, 2004.
- \_\_\_\_\_, *Federal taxation 2006: principles*, Prentice Hall, 2006.
- Saltman, Michael I., *IRS Practice and Procedure*, Boston New York: Warren, Gorham & Lamont, 1981.

IBFD *Online Publications*, (<http://www.ibfd.org/>), [Cited 2006. 7. 20.].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Search the United States Code*,  
(<http://uscode.house.gov/search/criteria.shtml>), [Cited 2006. 7. 20.].

Recht-in.de, (<http://www.recht-in.de/>), [Cited 2006. 7. 20.].

## 부록: 주요국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 (미국, 일본, 독일)

### 1. 미국의 가산세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Sec. 6601. Interest on underpayment, nonpayment, or extensions of time for payment, of tax(과소납부, 미납부, 또는 납부시기의 연장에 대한 이자)

<p><b>(e)(2)(B) Interest on certain additions to tax</b></p> <p>Interest shall be imposed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y addition to tax imposed by section 6651(a)(1) or 6653 or under part II of subchapter A of chapter 68 for the period which -</p> <p>(i) begins on the date on which the return of the tax with respect to which such addition to tax is imposed is required to be filed (including any extensions), and</p> <p>(ii) ends on the date of payment of such addition to tax.</p>	<p><b>(e)(2)(B) 일정한 가산세에 대한 이자</b></p> <p>6651(a)(1) 또는 6653 또는 68장의 part II의 subchapter A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여하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의해 이자가 부과된다.</p> <p>(i) (납부기한의 연장을 포함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납세신고가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시작해서,</p> <p>(ii) 이와 같은 가산세의 납부기일이 끝남으로 종료</p>
--	---

Sec. 6651. Failure to file tax return or to pay tax(납세신고 제출이나 납부의 불이행)

<p><b>(a) Addition to the tax</b></p> <p>In case of failure -</p> <p>(1) to file any return required under authority of subchapter A of chapter 61 (other than part III thereof), subchapter</p>	<p><b>(a) 가산세</b></p> <p>불이행의 경우</p> <p>(1) chapter 61의 subchapter A(파트 III과는 별도로), (증류주, 와인 그리고 맥주와 관련하여) chapter 51의 subchapter</p>
--	---

<p>A of chapter 51(relating to distilled spirits, wines, and beer), or of subchapter A of chapter 52 (relating to tobacco, cigars, cigarettes, and cigarette papers and tubes), or of subchapter A of chapter 53(relating to machine guns and certain other firearms), on the date prescribed therefor (determined with regard to any extension of time for filing), unless it is shown that such failure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due to willful neglect, there shall be added to the amount required to be shown as tax on such return 5 percent of the amount of such tax if the failure is for not more than 1 month, with an additional 5 percent for each additional month or fraction thereof during which such failure continues, not exceeding 25 percent in the aggregate;</p>	<p>A, 또는(담배, 시가, 쥘런, 그리고 쥘런 종이와 튜브와 관련하여) chapter 52의 subchapter A, 또는 (기관총 또는 다른 화기와 관련하여) chapter 53의 subchapter A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 법정기한 내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본세(순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 1월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신고세액의 5%를 본세(순세액)에 가산하되, 최대 25%를 한도로 한다. 다만 무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p>
<p>(2) to pay the amount shown on tax on any return specified in paragraph (1) on or before the date prescribed for payment of such tax (determined with regard to any extension of time for payment), unless it is shown that such failure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due to willful neglect, there shall be added to the amount shown as tax on such return 0.5 percent of the amount of such tax if the failure is for not more than 1 month, with an additional 0.5 percent for each additional month or fraction thereof during which such failure continues, not exceeding 25 percent in the aggregate; or</p>	<p>(2)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본세에 대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 1월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세액의 0.5%를 본세에 가산하되, 최대 25%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무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

<p>(3) ... In the case of a failure to file a return of tax imposed by chapter 1 within 60 days of the date prescribed for filing of such return (determined with regard to any extensions of time for filing), unless it is shown that such failure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due to willful neglect, the addition to tax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less than the lesser of \$100 or 100 percent of the amount required to be shown as tax on such return.</p>	<p>(3) ...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최소한의 벌금이 적용되어 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와 1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된다. 이 경우 무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
<p><b>(b) Penalty imposed on net amount due</b>  For purposes of -  (1) subsection (a)(1), the amount of tax required to be shown on the return sha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any part of the tax which is paid on or before the date prescribed for payment of the tax and by the amount of any credit against the tax which may be claimed on the return,</p>	<p><b>(b) 순세액에 부과되는 가산세</b>   다음은 목적으로 -  (1) (a)(1)에서, 본세(순세액)는 총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법정기한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p>
<p><b>(f) Increase in penalty for fraudulent failure to file</b>  If any failure to file any return is fraudulent, paragraph (1) of subsection (a) shall be applied -  (1) by substituting "15 percent" for "5 percent" each place it appears, and  (2) by substituting "75 percent" for "25 percent".</p>	<p><b>(f) 사기에 의한 증가산세</b>   미신고가 사기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1)의 (a)가 적용되며,   (1)·(2)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와 추가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신고세액의 15%를 본세에 가산하되, 최대 75%를 한도로 한다.</p>

**Sec. 6662. Imposition of accuracy-related penalty(정확성 관련 가산세)**

<p><b>(a) Imposition of penalty</b>                  If this section applies to any portion of an underpayment of tax required to be shown on a return, there shall be added to the tax an amount equal to 20 percent of the portion of the underpaymen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p> <p><b>(b) Portion of underpayment to which section applies</b>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portion of any underpayment which is attributable to 1 or more of the following:</p> <p>(1) Negligence or disregard of rules or regulations.</p> <p>(2) Any 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p> <p>(3) Any substantial valuation misstatement under chapter 1.</p> <p>(4) Any substantial overstatement of pension liabilities.</p> <p>(5) Any substantial estate or gift tax valuation understatement.</p> <p>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an underpayment on which a penalty is imposed under section 6663.</p>	<p><b>(a) 가산세의 부과</b>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로 세액을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과소납부된 세액의 20%를 정확성 관련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b>(b) 이 조항이 적용되는 비율</b>                  이 조항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과소납부의 비율에 따라 적용된다.</p> <p>(1) 법규정 준수에 대한 태만, 부주의.</p> <p>(2) 소득세에 대한 중대한 과소신고</p> <p>(3) chapter 1과 관련한 중대한 과소평가</p> <p>(4) 연금 납부액에 대한 중대한 과대평가</p> <p>(5) 상속·증여세의 중대한 과소평가</p> <p>이 조항은 Sec. 6663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과소납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	--

**Sec. 6663. Imposition of fraud penalty(민사 사기행위에 대한 증가산세)**

<p><b>(a) Imposition of penalty</b>                  If any part of any underpayment of tax required to be shown on a return is due to fraud, there shall be added to the tax an amount equal to 75 percent</p>	<p><b>(a) 가산세의 부과</b>                  사기행위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에 기한 과소납부부분의 75%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p>
---	---

<p>of the portion of the underpayment which is attributable to fraud.</p> <p><b>(b) Determination of portion attributable to fraud</b></p> <p>If the Secretary establishes that any portion of an underpayment is attributable to fraud, the entire underpayment shall be treated as attributable to fraud, except with respect to any portion of the underpayment which the taxpayer establish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s not attributable to fraud.</p> <p><b>(c) Special rule for joint returns</b></p> <p>In the case of a joint retur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 spouse unless some part of the underpayment is due to the fraud of such spouse.</p>	<p><b>(b)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율의 결정</b></p> <p>과세당국이 미납부세액 중 일부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미납부세액 전부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우월한 증거에 의하여 사기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 <p><b>(c) 합산신고에 대한 특칙</b></p> <p>합산신고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이 어느 배우자의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 아닐 경우 이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p>
--	---

**Sec. 6721. Failure to file correct information returns(정확한 정보보고서 제출의 불이행)**

<p><b>a) Imposition of penalty</b></p> <p><b>(1) In general</b></p> <p>In the case of a failure described in paragraph (2) by any person with respect to an information return, such person shall pay a penalty of \$50 for each return with respect to which such a failure occurs, but the total amount imposed on such person for all such failures during any calendar year shall not exceed \$250,000.</p> <p><b>(b) Reduction where correction in specified period</b></p>	<p><b>a) 제재의 부과</b></p> <p><b>(1) 일반원칙</b></p> <p>법정기일까지 paragraph (2)의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그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고서에 부당한 정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 매건마다 50달러의 정액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보고의무자 기준으로 연간 2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p> <p><b>(b) 특정기간에 정보수정이 있는 경우의 감면</b></p>
--	--

<p><b>(1) Correction within 30 days</b>                  If any failure described in subsection (a)(2) is corrected on or before the day 30 days after the required filing date -                  (A) the penalty imposed by subsection (a) shall be \$15 in lieu of \$50, and                  (B) the total amount imposed on the person for all such failures during any calendar year which are so corrected shall not exceed \$75,000.</p> <p><b>(2) Failures corrected on or before August 1</b>                  If any failure described in subsection (a)(2) is corrected after the 30th day referred to in paragraph (1) but on or before August 1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required filing date occurs -                  (A) the penalty imposed by subsection (a) shall be \$30 in lieu of \$50, and                  (B) the total amount imposed on the person for all such failures during the calendar year which are so corrected shall not exceed \$150,000.</p>	<p><b>(1) 30일 이내의 수정</b>                  법정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법정기한 후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매건 보고서마다 15달러로 경감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7만5천달러를 넘을 수 없다.</p> <p><b>(2) 8월 1일까지 수정된 미이행에 대한 처리</b>                  법정기일 이후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미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 중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에는 매건 보고서마다 3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간 가산세액은 15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p>
---	---

## 2. 일본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國稅通則法)

<p>第六章 附帶稅：          第一節 延滯稅及び利子稅：          延滯稅：</p>	<p>제6장 부대세          제1절 연체세 및 이자세          연체세</p>
<p>第六十條 納稅者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延滯稅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 期限内申告書を提出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告書の提出により納付すべき國稅をその法定納期限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p> <p>二 期限後申告書若しくは修正申告書を提出し、又は更正若しくは第二十五條(決定)の規定による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五條第二項(期限後申告等による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國稅があるとき。</p> <p>三 納稅の告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告知により納付すべき國稅(第五号に規定する國稅、不納付加算稅、重加算稅及び過怠稅を除く。)をその法定納期限後に納付するとき。</p> <p>四 予定納稅に係る所得稅をその法定納期限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p> <p>五 源泉徴收による國稅をその法定納期限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p>	<p>제60조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세를 납부해야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한내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신고서의 제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국세를 그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li> <li>2. 기한후신고서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이나 제26조(결정)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제35조 제2항(기한후신고등에 의한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li> <li>3. 납세의 고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 불납부가산세, 증가산세 및 과태세를 제외)를 그 법정기한까지 납부한 경우</li> <li>4. 예정납세에 대한 소득세를 그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li> <li>5.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를 그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li> </ol>
<p>2 延滯稅の額は、前項各号に規定する國稅の法定納期限(純損失の繰戻し等による還付金額が過大であつたことにより納付すべきこととなつた國稅、輸入の許可を受けて保稅地域から引き取られる物品に對する消費稅等(石油石炭稅法第十七條第三項(引取りに係る原油等)についての石油石炭稅の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石油石炭稅を除く。)その他政令で定める國稅に</p>	<p>② 부대세액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한(순손실의 이월 등에 따른 환급액이 커서 납부해야만 하는 국세, 수입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물품에 대한 소비세 등(석유석탄세법 제17조 제3항(인취에 따른 원유 등에 대한 석유석탄세의 납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석유석탄세를 제외)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에 대해서</p>

<p>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日の翌日からその國稅を完納する日までの期間の日數に応じ、その未納の稅額に年十四・六パーセント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額とする。ただし、納期限(延納又は物納の許可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取消しに係る書面が發せられた日。以下この項並びに第六十三條第一項、第四項及び第五項(納稅の猶予等の場合の延滞稅の免除)において同じ。)までの期間又は納期限の翌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期間については、その未納の稅額に年七・三パーセント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額とする。</p>	<p>는 시행령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국세를 완납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수를 그 미납세액에 연14.6%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단, 납부기한(연납이나 물납의 허가가 최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에 관한 서면이 공표된 날. 이하 이항 및 제6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납세의 유예 등의 경우에 연체세의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까지의 기간 및 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그 미납세액에 연7.3%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p>
<p>3 第一項の納稅者は、延滞稅をそ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國稅にあわせて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③ 제1항의 납세자는 연체세를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와 더불어 납부해야 한다.</p>
<p>4 延滞稅は、そ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稅額の屬する稅目の國稅とする。</p>	<p>④ 연체세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에 속하는 세목의 국세가 된다.</p>
<p>(延滞稅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期間の特例) :</p> <p>第六十一條 修正申告書(偽りその他不正の行爲により國稅を免れ、又は國稅の還付を受けた納稅者が当該國稅についての調査があつたことにより当該國稅について更正があるべきことを予知して提出した当該申告書を除く。)の提出又は更正(偽りその他不正の行爲により國稅を免れ、又は國稅の還付を受けた納稅者についてされた当該國稅に係る更正を除く。)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により納付すべき國稅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から当該各号に掲げる期間を控除して、同項の規定を適用する。</p> <p>一 その申告又は更正に係る國稅につい</p>	<p><b>연체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의 특례</b></p> <p>제61조 수정신고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라 국세의 면제나 국세의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당해국세에 대한 조사에 따라 당해국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신고서를 제외)의 제출 및 경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라 국세의 면제나 국세의 환급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된 당해국세에 대한 경정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제출 및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만 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걸쳐진 기간을 공제하고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 신고 및 경정에 따른 국세에 대해서</p>

<p>て期限内申告書が提出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法定申告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後に当該修正申告書が提出され、又は当該更正に係る更正通知書が發せられたとき。その法定申告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の翌日から当該修正申告書が提出され、又は当該更正に係る更正通知書が發せられた日までの期間</p> <p>二 その申告又は更正に係る國稅について期限後申告書(還付金の還付を受けるための納稅申告書で政令で定めるもの(以下「還付請求申告書」という。))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が提出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期限後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する日後に当該修正申告書が提出され、又は当該更正に係る更正通知書が發せられたとき。その期限後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する日の翌日から当該修正申告書が提出され、又は当該更正に係る更正通知書が發せられた日までの期間</p>	<p>기한내에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당해 수정신고서가 제출되거나 당해 경정에 대한 경정통지서가 발부되는 때에는 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정신고서가 제출되거나 당해 경정에 따른 국세에 대한 기한 후 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p> <p>2. 신고 및 경정에 따른 국세에 대해서 기한후신고서(환급금의 환급을 받기 위한 납세신고서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하 「환급청구신고서」라고 함)을 포함. 이하 동호에 대해서 동일)가 제출되었던 경우에는 그 기한후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는 날 후에 당해 수정신고서가 제출되거나 당해 경정에 따른 경정통지서가 공표된 때에는 그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정신고서가 제출되거나 당해 경정에 따른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p>
<p>2 源泉徴収による國稅で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から当該各号に掲げる期間を控除して、同項の規定を適用する。ただし、その國稅を法定納期限までに納付し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偽りその他不正の行爲がある場合(第二号に掲げる國稅については、当該國稅についての調査があつたことにより当該國稅について第三十六條第一項(納稅の告知)の規定による納稅の告知があるべきことを予知して納付されたときに限る。)は、この限りでない。</p> <p>一 法定納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後に納稅告知書が發せられた國稅 その法定</p>	<p>② 원천징수에 따른 국세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전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으로부터 해당 각호에 걸쳐진 기간을 공제하고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제2호에 걸쳐진 국세에 대해서는 해당국세의 조사가 있을 있었던 사실보다 해당국세에 대해서 제36조 제1항(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납부되었던 경우에 한함)에 한정되지 않는다</p> <p>1.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 후에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었던 국</p>

<p>納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の翌日から当該告知書が發せられた日までの期間</p> <p>二 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き、法定納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後に納付された國稅 その法定納期限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の翌日から当該納付の日までの期間</p>	<p>세나 법정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고지서가 발행되어진 날까지의 기간</p> <p>2. 전호에 걸쳐진 기간을 제외하고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일년을 경과한 날 후에 납부된 국세는 그 법정 납기기한으로부터 일년을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납부의 납부의 날까지의 기간</p>
<p>(一部納付が行なわれた場合の延滞稅の額の計算等)</p> <p>第六十二條 延滞稅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國稅の一部が納付されたときは、その納付の日の翌日以後の期間に係る延滞稅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稅額は、その納付された稅額を控除した金額とする。</p> <p>2 第六十條第三項(延滞稅の納付)の規定により延滞稅をあわせて納付すべき場合において、納稅者の納付した金額がその延滞稅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國稅の額に達するまでは、その納付した金額は、まずその計算の基礎となる國稅に充てられたものとする。</p>	<p>일부 납부가 있었던 경우에 연체세액의 계산 등</p> <p>제62조 연체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는, 그 납부한 날의 다음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되는 연체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은, 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2 제60조제3항(연체세의 납부)의 규정에 따라 연체세를 함께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이 그 연체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액수에 이를 때까지는, 그 납부한 금액은, 우선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에 충당된 것으로 한다.</p>
<p>(納稅の猶予等の場合の延滞稅の免除)</p> <p>第六十三條 第四十六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一号、第二号若しくは第五号(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當する事實に類する事實に係る部分に限る。)(災害等による納稅の猶予)の規定による納稅の猶予(以下この項において「災害等による納稅の猶予」という。)若しくは國稅徵收法第五十三條第一項(滯納處分の停止)の規定による滯納處分の執行の停止をした場合又は第四十六條第二項第三号、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同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該當する事實に類する事實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納稅の猶予(以下この</p>	<p><b>납세의 유예등의 경우 연체세의 면제</b></p> <p>제63조 제46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5호(동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유사한 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재해 등에 의한 납세의 유예)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유예(이하 이 항에서는 「재해 등에 의한 납세의 유예」라고 한다。) 혹은 국세징수법 제153조 제1항(체납처분의 정지)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의 정지를 했을 경우 또는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호 혹은 제5호(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유사한 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혹은 제3항의</p>

<p>項において「事業の廢止等による納税の猶予」という。)若しくは同法第五百十一條第一項(換価の猶予)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をした場合には、その猶予又は停止をした國税に係る延滞税のうち、それぞれ、その災害等による納税の猶予若しくは当該執行の停止をした期間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に相當する金額又はその事業の廢止等による納税の猶予若しくは当該換価の猶予をした期間(当該國税の納期限の翌日から二月を經過する日後の期間に限る。)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の二分の一に相當する金額は、免除する。ただし、第四十九條第一項(納税の猶予の取消し)(同法第五百十二條(換価の猶予の取消し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同法第五百十四條第一項(滞納處分の停止の取消し)の規定による取消しの基因となるべき事實が生じた場合には、その生じた日以後の期間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については、國税局長、稅務署長又は稅關長は、その免除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p>	<p>규정에 의한 납세의 유예(이하 이 항에서는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한 납세의 유예」라고 한다.) 혹은 동 법 제1 51조제1항(환가의 유예)의 규정에 따라 환가했을 경우에는, 그 유예 또는 정지를 한 국세와 관련되는 연체세 중 그 재해 등에 의한 납세의 유예 혹은 해당 집행의 정지를 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한 납세의 유예 혹은 해당 환산가의 유예를 한 기간(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1항(납세유예의 취소)(동 법 제152조(환가유예의 취소 등)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 154조 제1항(체납처분정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국장, 세무서이나 세관장은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p>
<p>2 第十一條(期限の延長)の規定により國税の納期限を延長した場合には、その國税に係る延滞税のうちその延長をした期間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は、免除する。</p>	<p>② 제11조(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해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그 국세와 관련되는 연체세 중 그 연장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면제한다.</p>
<p>3 納税の猶予又は國税徴收法第五百十一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をした場合において、納税者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國税局長、稅務署長又は稅關長は、その猶予をした國税に係る延滞税(前二項の規定による免除に係る部分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つき、猶予をした期間(当該國税を当該期間内に</p>	<p>③ 납세의 유예 또는 국세 징수법 제 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가의 유예를 했을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국세국장, 세무서나 세관장은 그 유예를 한 국세에 대한 연체세(동조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대해 유예를 한 기간(해당 국세</p>

<p>納付し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国税局長、税務署長又は税關長が認める場合には、猶予の期限の翌日から当該やむを得ない理由がやんだ日までの期間を含む。)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でその納付が困難と認められるものを限度として、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納税者の財産の狀況が著しく不良で、納期又は弁済期の到來した地方税若しくは公課又は債務について輕減又は免除をしなければ、その事業の繼續又は生活の維持が著しく困難にな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輕減又は免除がされたとき。</p> <p>二 納税者の事業又は生活の狀況によりその延滞税の納付を困難とする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p>	<p>를 해당 기간내에 납부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국세국장, 세무서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이유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한도로 면제할 수 있다.</p> <p>1. 납세자의 재산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납기 또는 변제기에 도래한 지방세 혹은 공과 또는 채무에 대해 경감 또는 면제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현저하고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되어 경감 또는 면제가 되었을 때.</p> <p>2 납세자의 사업 또는 생활의 상황에 따라 연체세의 납부가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p>
<p>4 第二十三條第五項ただし書(更正の請求と國稅の徴收との關係)その他の國稅に關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國稅の徴收を猶予した場合には、その猶予をした國稅に係る延滞税につき、その猶予をした期間のうち当該國稅の納期限の翌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後の期間(前三項の規定により延滞税の免除がされた場合には、当該免除に係る期間に該當する期間を除く。)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の二分の一に相當する金額は、免除する。</p>	<p>④ 제23조 제5항 단서(경정청구와 국세징수와의 관계) 그 외의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세의 징수를 유예했을 경우에는, 그 유예를 한 국세와 관련되는 연체세에 대해 유예를 한 기간 중 해당 국세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후의 기간(동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세 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면제와 관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다.)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면제한다.</p>
<p>5 國稅局長、税務署長又は税關長は、滞納に係る國稅の全額を徴收するために必要な財産につき差押えをし、又は納付すべき税額に相當する担保の提供を受けた場合には、その差押え又は担保の提供に係る國稅を計算の基礎とする延滞税につき、その差押え又は担保の提供がされている期間の</p>	<p>⑤ 국세국장,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체납과 관련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압류나 담보의 제공과 관련되는 국세를 계산의 기초로 하는 연체세에 대해 그 압류나 담보의 제</p>

<p>うち、当該國稅の納期限の翌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後の期間(前各項の規定により延滞稅の免除がされた場合には、当該免除に係る期間に該当する期間を除く。)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の二分の一に相當する金額を限度として、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공 기간 중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후의 기간(동 조 이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해 연체세의 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면제와 관련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다.)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서 면제할 수 있다.</p>
<p>6 國稅局長、稅務署長又は稅關長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國稅に係る延滞稅(前各項の規定による免除に係る部分を除く。)につき、当該各号に掲げる期間に對應する部分の金額を限度として、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第五十五條第三項(納付委託)(第五十二條第六項(保証人からの徴收)又は國稅徴收法第三十二條第三項(第二次納稅義務者からの徴收)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有價証券の取立て及び國稅の納付の再委託を受けた金融機關が当該有價証券の取立てをすべき日後に当該國稅の納付をした場合(同日後にその納付があつたことにつき当該有價証券の取立てを委託した者の責めに歸すべき事由がある場合を除く。) 同日の翌日からその納付があつた日までの期間</p> <p>二 納稅貯蓄組合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四百五号)第六條第一項(租稅納付の委託)の規定による國稅の納付の委託を受けた同法第二條第二項(定義)に規定する指定金融機關(國稅の收納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除く。)がその委託を受けた日後に当該國稅の納付をした場合(同日後にその納付があつたことにつき納稅者の責めに</p>	<p>⑥ 國稅국장,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국세와 관련된 연체세(동 조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하다.)에 대해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한도로 면제할 수 있다.</p> <p>1. 제 55조 제3항(납부 위탁)(제 52조 제6항(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또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항(제 2차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추심 및 국세납부의 재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유가증권의 추심을 해야 하는 날 후에 해당 국세의 납부를 했던 경우(해당일 후에 그 납부가 있었던 것에 대해 해당 유가증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p> <p>2. 납세저축조합법(소화 26년 법률 제 145호) 제6조제1항(조세 납부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의 위탁을 받은 동법 제2조 제2항(정의)에 규정하는 지정금융기관(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그 위탁을 받은 날 후에 해당 국세의 납부를 했을 경우(해당일 후에 그 납부가 있었던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책</p>

<p>歸すべき事由がある場合を除く。) 同日の翌日からその納付があつた日までの期間</p> <p>三 震災、風水害、火災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災害により、國稅を納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が生じた場合 その事由が生じた日からその事由が消滅した日以後七日を経過した日までの期間</p> <p>四 前各号の一に該當する事實に類する事實が生じた場合で政令で定める場合 政令で定める期間</p>	<p>임이 귀속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납부일까지의 기간</p> <p>3. 지진, 풍수해, 화재 그 외 이와 유사한 재해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 7일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p> <p>4. 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에 비스듬하는 사실이 생겼을 경우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p>
<p>(利子稅)</p> <p>第六十四條 延納若しくは物納又は納稅申告書の提出期限の延長に係る國稅の納稅者は、國稅に關する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當該國稅にあわせて利子稅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利子稅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期間は、第六十條第二項(延滞稅の額の計算)に規定する期間に算入しない。</p> <p>3 第六十條第四項(延滞稅の屬する稅目)、第六十二條(一部納付が行なわれた場合の延滞稅の額の計算等)並びに前條第二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利子稅について準用する。</p>	<p>이자세</p> <p>제64조 연납 혹은 물납이나 납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의 연장과 관련되는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세와 함께 이자세를 납부해야 한다.</p> <p>② 이자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제61조 제2항(연체세액의 계산)에 규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③ 제60조 제4항(연체세에 속하는 세목), 제62조(일부 납부가 행해졌을 경우의 연체세액의 계산 등) 및 전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자세에 대해서도 준용한다.</p>
<p>第二節 加算稅 (過少申告加算稅)</p> <p>第六十五條 期限内申告書(還付請求申告書を含む。第三項において同じ。)が提出された場合(期限後申告書が提出された場合において、次條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があるときを含む。)において、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があつたときは、當該納稅者に對し、その修正申告又は更正に基づき第三十五條第二項(期限後申告等による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稅額に百</p>	<p>제2절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p> <p>제65조 기한내 신고서(환부청구신고서를 포함한다. 제3항에 대해서도 같다.)가 제출되었고 (기한 후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다음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정 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해 그 수정 신고 또는 경정에 근거하여 제35조제2항(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한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p>

<p>分の十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過少申告加算税を課する。</p>	<p>부해야 할 세액에 백 분의10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p>
<p>2 前項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に規定する納付すべき税額(同項の修正申告又は更正前に当該修正申告又は更正に係る国税について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があつたときは、その国税に係る累積増差税額を加算した金額)がその国税に係る期限内申告税額に相当する金額と五十万円とのいずれか多い金額を超えるときは、同項の過少申告加算税の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金額に、当該超える部分に相当する税額(同項に規定する納付すべき税額が当該超える部分に相当する税額に満たないときは、当該納付すべき税額)に百分の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を加算した金額とする。</p>	<p>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항에 규정하는 납부해야 할 세액(동항의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전에 해당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되는 국세에 대해 수정 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던 때는 그 국세와 관련되는 누적증차세액을 가산한 금액)이 그 국세와 관련되는 기한내 신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동항의 과소 신고가산세액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동항에 규정하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해당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못 미칠 때는, 해당 납부해야 할 세액)에 백분의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p>
<p>3 前項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p> <p>一 累積増差税額 第一項の修正申告又は更正前にされたその国税についての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に基づき第三十五條第二項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税額の合計額(当該国税について、当該納付すべき税額を減少させる更正又は更正に係る不服申立て若しくは訴えについての決定、裁決若しくは判決による原處分の異動があつたときはこれらにより減少した部分の税額に相当する金額を控除した金額とし、次項の規定の適用があつた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り控除すべきであつた金額を控除した金額とする。)</p>	<p>③ 전항에서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1. 누적증차세액 : 제1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한 수정 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에 근거해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합계액(해당 국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또는 경정과 관련되는 불복신청 혹은 소에 대한 결정, 재결 혹은 판결에 의한 원처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감소한 부분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해야만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二 期限内申告税額 期限内申告書(次條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期限後申告書を含む。)の提出に基づき第三十五條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税額(これらの申告書に係る國税について、次に掲げる金額があるときは当該金額を加算した金額とし、所得稅、法人稅、相續稅又は消費稅に係るこれらの申告書に記載された還付金の額に相当する税額があるときは当該税額を控除した金額とする。)</p>	<p>2. 기한내신고세액 : 기한내 신고서(다음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신고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에 근거해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러한 신고서와 관련되는 국세에 대해서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또는 소비세와 관련되는 이러한 신고서에 기재된 환부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세액이 있을 때는 해당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イ 所得稅法第九十五條(外國税額控除)の規定による控除をされるべき金額、第一項の修正申告若しくは更正に係る同法第二百十條第一項第五号(確定申告書の記載事項)(同法第百六十六條(非居住者に對する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源泉徴收 税額に相当する金額、同法第二百十條第二項(同法第百六十六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予納税額又は災害被害者に對する租稅の減免、徴收猶予等に關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七十五号)第二條(所得稅の輕減又は免除)の規定により輕減若しくは免除を受けた所得稅の額</p>	<p>가. 소득세법 제95조(외국 세액 공제)의 규정에 의해 공제해야 할 금액, 제1항의 수정신고 혹은 경정과 관련된 동법 제120조 제1항 제5호(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동법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동법 제120조 제2항(동법 제166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예납세액 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昭和 22년 법률 제175호) 제2조(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규정에 의해 경감 혹은 면제를 받은 소득세의 액수.</p>
<p>ロ 法人稅法第二條第四十一号 定義)に規定する中間納付額、同條第四十二号に規定する 清算中の予納額、同法第六十八條(所得稅額の控除)(同法第四百四十四條(外國法人に對する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六十九條(外國税額の控除)、第八十一條の十四(連結事業年度における所得稅額の控除)、第八十一條の十五(連結事業年度における外國税額の控除)、第八十二條の六(特定信託に係る所得稅額</p>	<p>나. 법인세법 제2조 제41호(정의)에 규정하는 중간 납부액, 동조 제42호에 규정하는 청산중의 예납액, 동법 제68조(소득세액의 공제)(동법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외국 세액의 공제), 제81조의 14(연결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소득세액의 공제), 제81조의 15(연결사업년도에 있어서 외국세액의 공제), 제82조의 6(특정 신탁과 관련되는 소득세액의 공</p>

<p>の控除)(同法第四百四十五條の六(外國法人に對する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八十二條の七(特定信託に係る外國税額の控除)(同法第四百四十五條の七(外國法人に對する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控除をされるべき金額、同法第九十條 退職年金等積立金に係る中間申告による納付)(同法第四百四十五條の十二(外國法人に對する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法人税の額(その額につき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申告又は更正後の法人税の額)又は同法第百條(解散の場合の清算所得に對する法人税額からの所得税額の控除)の規定による控除をされるべき所得税の額</p>	<p>제)(동법 제145조의 7(외국 법인에 대한 준용)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82조의 7(특정 신탁과 관련되는 외국 세액의 공제)(동법 제145조의 7(외국 법인에 대한 준용)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되어야 할 금액, 동법 제90조(퇴직연금 등 적립금과 관련된 중간신고에 의한 납부)(동법 제145조의 12(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그 액에 대한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법인세액)또는 동법 제100조(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부터의 소득세액의 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해야만 할 소득세액</p>
<p>ハ 相續稅法第二十條の二(在外財産に對する相續税額の控除)、第二十一條の八(在外財産に對する贈与税額の控除)、第二十一條の十五第三項及び第二十一條の十六第四項(相續時精算課税に係る贈与税相当額の控除)の規定による控除をされるべき金額 ニ 消費稅法第二條第一項第二十号(定義)に規定する中間納付額</p>	<p>다. 상속세법제20조의 2(재외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공제), 제21조의 8(재외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 제21조의 15 제3항 및 제21조의 16 제4항(상속시 정산 과세와 관련되는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여야 할 금액 라. 소비세법제2조 제1항 제20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중간납부액</p>
<p>4 第一項又は第二項に規定する納付すべき税額の計算の基礎となつた事實のうちにその修正申告又は更正前の税額(還付金の額に相当する税額を含む。)の計算の基礎と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項に規定する納付すべき税額からその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事實に基づく税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控除して、これら</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중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전의 세액(환부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함한다.)의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부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는 세액으로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p>

<p>의項の規定を適用する。</p> <p>5 第一項の規定は、修正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提出が、その申告に係る國稅についての調査があつたことにより当該國稅について更正があるべきことを予知してされたものでないときは、適用しない。</p>	<p>하고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은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신고와 관련되는 국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국세에 대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無申告加算稅)</p> <p>第六十六條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納稅者に對し、当該各号に規定する申告、更正又は決定に基づき第三十五條第二項(期限後申告等による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稅額に百分の十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無申告加算稅を課する。ただし、期限内申告書の提出が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正當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一 期限後申告書の提出又は第二十五條(決定)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場合</p> <p>二 期限後申告書の提出又は第二十五條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後に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があつた場合</p> <p>2 前條第四項の規定は、前項第二号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p> <p>3 期限後申告書又は第一項第二号の修正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提出が、その申告に係る國稅についての調査があつたことにより当該國稅について更正又は決定があるべきことを予知してされたものでないときは、その申告に基づき第三十五條第二項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稅額に係る第一項の無申告加算稅の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納付すべき稅額に百分の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する。</p>	<p>(무신고가산세)</p> <p>제6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신고, 경정 또는 결정에 근거하여 제35조 제2항(기한 후 신고등에 의한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백분의 1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내신고서의 제출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기한후신고서의 제출 또는 제25조(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p> <p>2. 기한후신고서의 제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었던 후에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p> <p>②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③ 기한후신고서 또는 제1항 제2호의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신고와 관련되는 국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국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근거해서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과 관련되는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액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납부해야 할 세액에 백분의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不納付加算税)</p> <p>第六十七條 源泉徴収による國稅がその法定納期限までに完納されなかつた場合には、稅務署長は、当該納稅者から、第三十六條第一項第二号(源泉徴収による國稅の納稅の告知)の規定による納稅の告知に係る稅額又はその法定納期限後に当該告知を受けることなく納付された稅額に百分の十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不納付加算税を徴収する。ただし、当該告知又は納付に係る國稅を法定納期限までに納付し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2 源泉徴収による國稅が第三十六條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納稅の告知を受けることなくその法定納期限後に納付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納付が、当該國稅についての調査があつたことにより当該國稅について当該告知があるべきことを予知してされたものでないときは、その納付された稅額に係る前項の不納付加算稅の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納付された稅額に百分の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する。</p>	<p>(불납부가산세)</p> <p>제67조 원천징수에 의한 국세가 그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되어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은, 해당 납세자로부터 제36조 제1항 제2호(원천징수에 의한 국세 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와 관련되는 세액 또는 그 법정납부기한 후에 해당 고지를 받는 일 없이 납부된 세액에 백분의10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불납부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고지 또는 납부와 관련되는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p> <p>② 원천징수에 의한 국세가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를 받지 않고 그 법정납부기한 후에 납부되었고 그 납부가, 해당 국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대해서 고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납부된 세액과 관련되는 전항의 불납부가산세액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납부된 세액에 백분의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重加算税)</p> <p>第六十八條 第六十五條第一項(過少申告加算税)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同條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納稅者とその國稅の課稅標準等又は稅額等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實の全部又は一部を隱へいし、又は仮裝し、その隱へいし、又は仮裝したところに基づき納稅申告書を提出していたときは、当該納稅者に對し、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過少申</p>	<p>(중가산세)</p> <p>제68조 제65조 제1항(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동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에 대해서 납세자가 그 국세의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그 은폐 또는 가장에 근거하여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과소</p>

<p>告加算税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税額(その税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で隠ぺ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ものに基づくことが明らかであるものがあるときは、当該隠ぺ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事実に基づく税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控除した税額)に係る過少申告加算税に代え、当該基礎となるべき税額に百分の三十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重加算税を課する。</p>	<p>신고가산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그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은폐나 가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는 세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과 관련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대신해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 백분의 3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가산세를 부과한다.</p>
<p>2 第六十六條第一項(無申告加算税)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同項ただし書又は同條第三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納税者がその國税の課税標準等又は税額等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の全部又は一部を隠ぺいし、又は仮装し、その隠ぺいし、又は仮装したところに基づき法定申告期限までに納税申告書を提出せず、又は法定申告期限後に納税申告書を提出していたときは、当該納税者に對し、無申告加算税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税額(その税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で隠ぺ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ものに基づくことが明らかであるものがあるときは、当該隠ぺ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事実に基づく税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控除した税額)に係る無申告加算税に代え、当該基礎となるべき税額に百分の四十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重加算税を課する。</p>	<p>② 제66조제1항(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동항 단서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에 납세자가 그 국세의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그 은폐하거나 가장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 신고기한 후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을 때에는, 해당납세자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그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은폐나 가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는 세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과 관련되는 무신고 가산세를 대신해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 백분의 40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가산세를 부과한다.</p>
<p>3 前條第一項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同項ただし書又は同條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納税者が事實の全部又は一部を隠ぺいし、又は仮装し、その隠ぺいし、又は仮装したところに基づきその國税をその法定納期限までに納</p>	<p>③ 전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동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에 납세자가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그 은폐하거나 가장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p>

<p>付しなかつたときは、税務署長は、当該納税者から、不納付加算税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税額(その税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で隠べ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ものに基づくことが明らかであるものがあるときは、当該隠べいし、又は仮装されていない事実に基づく税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控除した税額)に係る不納付加算税に代え、当該基礎となるべき税額に百分の三十五の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に相当する重加算税を徴収する。</p> <p>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は、消費税等(消費税を除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p>	<p>세무서장은 해당 납세자로부터 불납부가산세의 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그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은폐나 가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는 세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과 관련되는 불납부가산세에 대신해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 백분의 3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가산세를 징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소비세 등(소비세를 제외하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p>
<p>(加算税の税目)</p> <p>第六十九條 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加算税、不納付加算税及び重加算税(以下「加算税」という。)は、その額の計算の基礎となる税額の屬する税目の國税とする。</p>	<p>(가산세의 세목)</p> <p>제69조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불납부가산세 및 증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 한다.)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이 속하는 세목의 국세로 한다.</p>

### 3. 독일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Abgabenordnung, AO)

<p><b>§ 233 Grundsatz</b></p> <p>Ansprüche aus dem Steuerschuldverhältnis (§ 37) werden nur verzinst, soweit dies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Ansprüche auf steuerliche Nebenleistungen (§ 3 Abs. 3) und die entsprechenden Erstattungsansprüche werden nicht verzinst.</p>	<p><b>§ 233 이자부과의 원칙</b></p> <p>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제37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에 부과되는 부수적인 급부(제3조 3항) 및 이에 대응한 환급청구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p>
<p><b>§ 233a Verzinsung von Steuernachforderungen und Steuerstattungen</b></p>	<p><b>§ 233a 조세추가청구와 조세환급에 관한 이자부과</b></p>

<p>(1) Führt die Festsetzung der Einkommen-, Körperschaft-, Vermögen-, Umsatz- oder Gewerbesteuer zu einem Unterschiedsbetrag im Sinne des Absatzes 3, ist dieser zu verzinsen. Dies gilt nicht für die Festsetzung von Vorauszahlungen und Steuerabzugsbeträgen.</p> <p>(2) Der Zinslauf beginnt 15 Monate nach Ablauf des Kalenderjahrs, in dem die Steuer entstanden ist. Er beginnt für die Einkommen- und Körperschaftsteuer 21 Monate nach diesem Zeitpunkt, wenn die 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bei der erstmaligen Steuerfestsetzung die anderen Einkünfte überwiegen. Er endet mit Ablauf des Tages, an dem die Steuerfestsetzung wirksam wird.</p> <p>(2a) Soweit die Steuerfestsetzung auf der Berücksichtigung eines rückwirkenden Ereignisses (§ 175 Abs. 1 Satz 1 Nr. 2 und Abs. 2) oder auf einem Verlustabzug nach § 10d Abs. 1 des Einkommensteuergesetzes beruht, beginnt der Zinslauf abweichend von Absatz 2 Satz 1 und 2 15 Monate nach Ablauf des Kalenderjahres, in dem das rückwirkende Ereignis eingetreten oder der Verlust entstanden ist.</p> <p>(3) Maßgebend für die Zinsberechnung ist die festgesetzte Steuer, vermindert um die anzurechnenden Steuerabzugsbeträge, um die anzurechnende Körperschaftsteuer und um die bis zum Beginn des Zinslaufs festgesetzten Vorauszahlungen(Unterschiedsbetrag). Bei der Vermögensteuer ist als Unterschiedsbetrag für die Zinsberechnung die festgesetzte Steuer, vermindert um die festgesetzten Vorauszahlungen oder</p>	<p>(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영업세의 확정으로 조세나 조세환급액이 확정되면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자를 부과한다. 이는 조세예납이나 조세감면액의 확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p>(2) 이자기간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역년의 경과 후 15개월부터 계산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이자기간은 최초 세액확정시의 농림업에 의한 소득이 다른 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역년 경과 후 21개월부터 계산한다. 이자 계산기간은 조세부과의 시효의 만기일로 종료한다.</p> <p>(2a) 소급적인 사건을 참작하거나 소득세법의 제10d조 1항에 따라 손실감액에 근거를 둔 조세확정의 경우 2항 1, 2문에 의해 소급적인 사건이나 손실이 발생한 역년의 경과 후 15개월부터 이자기간이 계산된다.</p> <p>(3) 이자산정에 대한 기준은 확정된 조세에서 계산될 조세감면액, 계산될 법인세 및 확정된 조세예납(차액)을 감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는 이자계산의 차액으로서 확정된 조세예납 또는 현재까지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를 위해 차액은 배상될 금액의 액수만큼만 이자를 부과한다. 이자는 빨라도 납부일로부터 개시한다.</p>
---	---

die bisher festgesetzte Jahressteuer, maßgebend. Ein Unterschiedsbetrag zugunsten des Steuerpflichtigen ist nur bis zur Höhe des zu erstattenden Betrages zu verzinsen; die Verzinsung beginnt frühestens mit dem Tag der Zahlung.

(4) Die Festsetzung der Zinsen soll mit der Steuerfestsetzung verbunden werden.

(5) Wird die Steuerfestsetzung aufgehoben, geändert oder nach § 129 berichtigt, ist eine bisherige Zinsfestsetzung zu ändern; gleiches gilt, wenn die Anrechnung von Steuerbeträgen zurückgenommen, widerrufen oder nach § 129 berichtigt wird. Maßgebend für die Zinsberechnung ist der Unterschiedsbetrag zwischen der festgesetzten Steuer und der vorher festgesetzten Steuer, jeweils vermindert um die anzurechnenden Steuerabzugsbeträge und um die anzurechnende Körperschaftsteuer. Dem sich hiernach ergebenden Zinsbetrag sind bisher festzusetzende Zinsen hinzuzurechnen; bei einem Unterschiedsbetrag zugunsten des Steuerpflichtigen entfallen darauf festgesetzte Zinsen. Im übrigen gilt Absatz 3 Satz 3 entsprechend.

(6) Die Absätze 1 bis 5 gelten bei der Durchführung des Lohnsteuer-Jahresausgleichs entsprechend.

(7) Bei Anwendung des Absatzes 2a gelten die Absätze 3 und 5 mit der Maßgabe, daß der Unterschiedsbetrag in Teil-Unterschiedsbeträge mit jeweils gleichem Zinslaufbeginn aufzuteilen ist; für jeden Teil-Unterschiedsbetrag sind Zinsen gesondert und in der zeitlichen Reihenfolge der Teil-Unterschiedsbeträge zu berechnen.

(4) 이자의 확정은 조세확정과 연결된다.

(5) 조세확정이 취소·변경되거나 제 129조에 따라 정정되는 경우에 현재까지의 이자확정이 변경된다. 조세액의 계산이 취소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자산정에 대한 기준은 확정된 조세와 이전에 확정된 조세의 차액에서 계산될 조세감면액과 계산될 법인세를 감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확정된 이자에서 다음에 발생될 이차액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납세의무자를 위해 차액의 경우 확정된 이자는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 외에 3항의 3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위(1~5항)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7) 2a항의 경우 차액이 이자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부분적인 차액으로 분배된다는 조건 하에 3항과 5항이 적용된다. 각 부분적인 차액에 대해 이자가 나눠지고 부분적인 차액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자가 산정된다. 가장 오래된 이자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부분적인 차액에 대해 이자가 시작된다. 납세의무자

<p>beginnend mit den Zinsen auf den Teil-Unterschiedsbetrag mit dem ältesten Zinslaufbeginn. Ergibt sich ein Teil-Unterschiedsbetrag zugunsten des Steuerpflichtigen, entfallen auf diesen Betrag festgesetzte Zinsen frühestens ab Beginn des für diesen Teil-Unterschiedsbetrag maßgebenden Zinslaufs: Zinsen für den Zeitraum bis zum Beginn des Zinslaufs dieses Teil-Unterschiedsbetrags bleiben endgültig bestehen. Dies gilt auch, wenn zuvor innerhalb derselben Zinsberechnung Zinsen auf einen Teil-Unterschiedsbetrag zuungunsten des Steuerpflichtigen berechnet worden sind.</p>	<p>를 위해 이 부분적인 차액에 대해 빨라도 표준적인 이자기간의 개시부터 확정된 이자가 이 금액에 속하게 된다. 이자기간 개시까지의 기간동안 이 부분적인 차액의 이자는 그대로 존재한다.</p>
<p><b>§ 234 Stundungszinsen</b></p> <p>(1) Für die Dauer einer gewährten Stundung von Ansprüchen aus dem Steuerschuldverhältnis werden Zinsen erhoben. Wird der Steuerbescheid nach Ablauf der Stundung aufgehoben, geändert oder nach § 129 berichtigt, so bleiben die bis dahin entstandenen Zinsen unberührt.</p> <p>(2) Auf die Zinsen kann ganz oder teilweise verzichtet werden, wenn ihre Erhebung nach Lage des einzelnen Falles unbillig wäre.</p> <p>(3) Zinsen nach § 233a, die für denselben Zeitraum festgesetzt wurden, sind anzurechnen.</p>	<p><b>§ 234 이자의 지급유예</b></p> <p>(1) 계속되는 지급유예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금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에 의해 이자가 징수된다. 지급기간 연기의 만료까지 조세에 관한 확정이 취소·변경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정정되었을 경우에 당해 처분시까지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p> <p>(2) 개별적인 경우의 상황에 따라 이자의 징수가 부당할 경우에 이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감해질 수 있다.</p> <p>(3) 제233a조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이자가 계산된다.</p>
<p><b>§ 235 Verzinsung von hinterzogenen Steuern</b></p> <p>(1) Hinterzogene Steuern sind zu verzinsen. Zinsschuldner ist derjenige, zu dessen Vorteil die Steuern hinterzogen</p>	<p><b>§ 235 탈세에 관한 조세이자</b></p> <p>(1) 탈루된 세액에도 이자를 붙인다. 이 경우의 이자채무자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탈세한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자</p>

<p>worden sind. Wird die Steuerhinterziehung dadurch begangen, daß ein anderer als der Steuerschuldner seine Verpflichtung, einbehaltene Steuern an die Finanzbehörde abzuführen oder Steuern zu Lasten eines anderen zu entrichten, nicht erfüllt, so ist dieser Zinsschuldner.</p> <p>(2) Der Zinslauf beginnt mit dem Eintritt der Verkürzung oder der Erlangung des Steuervorteils, es sei denn, daß die hinterzogenen Beträge ohne die Steuerhinterziehung erst später fällig geworden wären. In diesem Fall ist der spätere Zeitpunkt maßgebend.</p> <p>(3) Der Zinslauf endet mit der Zahlung der hinterzogenen Steuern. Für eine Zeit, für die ein Säumniszuschlag verwirkt, die Zahlung gestundet oder die Vollziehung ausgesetzt ist, werden Zinsen nach dieser Vorschrift nicht erhoben. Wird der Steuerbescheid nach Ende des Zinslaufs aufgehoben, geändert oder nach § 129 berichtigt, so bleiben die bis dahin entstandenen Zinsen unberührt.</p> <p>(4) Zinsen nach § 233a, die für denselben Zeitraum festgesetzt wurden, sind anzurechnen.</p>	<p>이외의 자가 원천징수한 조세를 세무관청에 납부할 의무 또는 제3자가 부담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탈세가 이루어진 때는 그 자가 이자채무자가 된다.</p> <p>(2) 탈세하지 않은 탈루된 금액의 지급기한이 늦은 것이 아니라면 이자기간은 탈세의 발생 또는 조세상의 이익 획득일에 시작한다. 이 경우에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p>(3) 이자기간은 탈루된 세액의 납부일로 종료한다. 이 기간동안 가산세를 몰수당하고 지급이 유예되거나 집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자는 이 규정대로 징수되지 않는다. 이자기간의 종료까지 조세에 대한 확정이 취소·변경 또는 제 129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p> <p>(4) 제233a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확정된 이자가 계산된다.</p>
<p><b>§ 238 Höhe und Berechnung der Zinsen</b></p> <p>(1) Die Zinsen betragen für jeden Monat einhalb vom Hundert. Sie sind von dem Tag an, an dem der Zinslauf beginnt, nur für volle Monate zu zahlen; angefangene Monate bleiben außer Ansatz. Erlischt der zu verzinsende Anspruch durch Aufrechnung, gilt der Tag, an dem</p>	<p><b>§ 238 이자계산과 액수</b></p> <p>(1) 이자는 월 0.05%의 금액으로 한다. 이자는 이자계산의 기산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된 달은 계산 외로 한다. 이자를 불일 청구권이 배상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면 배상할 채무의 만기일을 납부일로 적용한다.</p>

<p>die Schuld des Aufrechnenden fällig wird, als Tag der Zahlung.</p> <p>(2) Für die Berechnung der Zinsen wird der zu verzinsende Betrag jeder Steuerart auf den nächsten durch fünfzig Euro teilbaren Betrag abgerundet.</p>	<p>(2) 이자계산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일 각 세목별 세액이 50 유로 이하이면 절삭한다.</p>
<p><b>§ 240 Säumniszuschläge</b></p> <p>(1) Wird eine Steuer nicht bis zum Ablauf des Fälligkeitstages entrichtet, so ist für jeden angefangenen Monat der Säumnis ein Säumniszuschlag von eins vom Hundert des abgerundeten rückständigen Steuerbetrags zu entrichten: abzurunden ist auf den nächsten durch fünfzig Euro teilbaren Betrag. Das gleiche gilt für zurückzuzahlende Steuervergütungen und Haftungsschulden, soweit sich die Haftung auf Steuern und zurückzuzahlende Steuervergütungen erstreckt. Die Säumnis nach Satz 1 tritt nicht ein, bevor die Steuer festgesetzt oder angemeldet worden ist. Wird die Festsetzung einer Steuer oder Steuervergütung aufgehoben, geändert oder nach § 129 berichtigt, so bleiben die bis dahin verwirkten Säumniszuschläge unberührt: das gleiche gilt, wenn ein Haftungsbescheid zurückgenommen, widerrufen oder nach § 129 berichtigt wird. Erlischt der Anspruch durch Aufrechnung, bleiben Säumniszuschläge unberührt, die bis zur Fälligkeit der Schuld des Aufrechnenden entstanden sind.</p> <p>(2) Säumniszuschläge entstehen nicht bei steuerlichen Nebenleistungen.</p> <p>(3) Ein Säumniszuschlag wird bei einer Säumnis bis zu fünf Tagen nicht erhoben.</p>	<p><b>§ 240 연체가산세</b></p> <p>(1) 조세가 납부기한의 만료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는 연체가 시작한 각 월에 대하여 50 유로 이하를 절삭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매 시작된 월마다 1%의 연체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환할 조세환급금과 귀속책임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연체는 그러나 조세가 확정되거나 또는 신고 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 또는 조세상환의 확정이 취소·변경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시까지 발생한 연체가산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귀속책임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상을 통해 청구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배상할 채무의 지급기한까지 발생한 연체가산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p> <p>(2) 연체가산세는 조세의 부수적인 급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p> <p>(3) 연체가산세는 3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p>

<p>Dies gilt nicht bei Zahlung nach § 224 Abs. 2 Nr. 1.</p> <p>(4) In den Fällen der Gesamtschuld entstehen Säumniszuschläge gegenüber jedem säumigen Gesamtschuldner. Insgesamt ist jedoch kein höherer Säumniszuschlag zu entrichten als verwirkt worden wäre, wenn die Säumnis nur bei einem Gesamtschuldner eingetreten wäre.</p>	<p>제224조 2항 1번에 따라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4) 연대채무의 경우에 연체가산세는 연체한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지만 다만 그 총액은 1인의 연대채무자의 연체에 관한 경우에 발생한 연체가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p>
<p><b>§ 369 Steuerstraftaten</b></p> <p>(1) Steuerstraftaten(Zollstraftaten) sin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aten, die nach den Steuergesetzen strafbar sind,</li> <li>2. der Bannbruch,</li> <li>3. die Wertzeichenfälschung und deren Vorbereitung, soweit die Tat Steuerzeichen betrifft,</li> <li>4. die Begünstigung einer Person, die eine Tat nach den Nummern 1 bis 3 begangen hat.</li> </ol> <p>(2) Für Steuerstraftaten gelten die allgemeinen Gesetze über das Strafrecht, soweit die Strafvorschriften der Steuer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p>	<p><b>§ 369 조세범칙행위</b></p> <p>(1) 조세범칙행위(관세범칙행위)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행위,</li> <li>2. 수입금지에 대한 위반행위,</li> <li>3. 인지위조 및 그 예비(단, 당해 범죄가 수입인지에 관련된 경우에 한 한다)</li> <li>4. 위 (1~3)의 행위에 대한 비호를 말한다.</li> </ol> <p>(2)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법의 형사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한다.</p>
<p><b>§ 370 Steuerhinterziehung</b></p> <p>(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en Finanzbehörden oder anderen Behörden über steuerlich erhebliche Tatsach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macht,</li> <li>2. die Finanzbehörden pflichtwidrig über steuerlich erhebliche Tatsachen in Unkenntnis läßt oder</li> <li>3. pflichtwidrig die Verwendung von</li> </ol>	<p><b>§ 370 탈세</b></p> <p>(1) 탈세범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관청 또는 그 이외의 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하는 것</li> <li>2. 재무관청에 대하여 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리지 않은 것</li> <li>3. 의무에 위반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li> </ol>

<p>Steuerzeichen oder Steuerstemplern unterläßt und dadurch Steuern verkürzt oder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nicht gerechtfertigte Steuervorteile erlangt.</p> <p>(2) Der Versuch ist strafbar.</p> <p>(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us grobem Eigennutz in großem Ausmaß Steuern verkürzt oder nicht gerechtfertigte Steuervorteile erlangt,</li> <li>2.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li> <li>3. die Mithilfe eines Amtsträgers ausnutzt, der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mißbraucht, oder</li> <li>4. unter Verwendung nachgemachter oder verfälschter Belege fortgesetzt Steuern verkürzt oder nicht gerechtfertigte Steuervorteile erlangt.</li> </ol> <p>(4) Steuern sind namentlich dann verkürzt, wenn sie nicht, nicht in voller Höhe oder nicht rechtzeitig festgesetzt werden: dies gilt auch dann, wenn die Steuer vorläufig oder unter Vorbehalt der Nachprüfung festgesetzt wird oder eine Steueranmeldung einer Steuerfestsetzung unter Vorbehalt der Nachprüfung gleichsteht. Steuervorteile sind auch Steuervergütungen: nicht gerechtfertigte Steuervorteile sind erlangt, soweit sie zu Unrecht gewährt oder belassen werden. Die Voraussetzungen der Sätze 1 und 2 sind auch dann erfüllt, wenn die Steuer, auf die sich die Tat be-</p>	<p>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들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p> <p>(2) 이러한 것에 대한 시도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p> <p>(3) 특히 악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악질적인 경우란 다음의 각호의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정도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li> <li>2.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li> <li>3.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원조를 이용하는 경우</li> <li>4.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 이익을 얻은 경우</li> </ol> <p>(4) 조세가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조세는 탈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조세가 사전에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 하에 확정되거나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 하에 납세신고를 조세 확정과 동일하게 본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당하게 부여되거나 부당하게 조세상의 이익을 받는 환급도 조세상의 이익으로 본다. 범죄와 관련된 조세가 다른 이유로 사면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조세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p>
---	---

zieht, aus anderen Gründen hätte ermäßigt oder der Steuervorteil aus anderen Gründen hätte beansprucht werden können.

(5) Die Tat kann auch hinsichtlich solcher Waren begangen werden, deren Einfuhr, Ausfuhr oder Durchfuhr verboten ist.

(6) Die Absätze 1 bis 5 gelten auch dann, wenn sich die Tat auf Einfuhr- oder Ausfuhrabgaben bezieht, die vo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erwaltet werden oder die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Freihandelsassoziation oder einem mit dieser assoziierten Staat zustehen. Das gleiche gilt, wenn sich die Tat auf Umsatzsteuern oder auf harmonisierte Verbrauchsteuern, für die in Artikel 3 Abs. 1 der Richtlinie 92/12/EWG des Rates vom 25. Februar 1992 (ABl. EG Nr. L 76 S. 1) genannten Waren bezieht, die vo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erwaltet wird. Die in Satz 2 bezeichneten Taten werden nur verfolgt, wenn die Gegenseitigkeit zur Zeit der Tat verbürgt und dies in einer Rechtsverordnung nach Satz 4 festgestellt is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ird ermächtig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in einer Rechtsverordnung festzustellen, im Hinblick auf welche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Taten im Sinne des Satzes 2 wegen Verbürgung der Gegenseitigkeit zu verfolgen sind.

(7) Die Absätze 1 bis 6 gelten unabhängig von dem Recht des Tatortes

(5) 탈세와 관련된 범행은 수입, 수출, 통과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6) 수입세 또는 수출세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타 회원국에 의해 처리되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타 회원국 또는 동 연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귀속되어 위 (1~5항)의 내용이 적용된다. 소비세나 관세에 대하여 탈세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출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타 회원국에 의해 처리된다. 위에서 설명하는 탈세에 관한 범행에 대해 범행의 시간에 대한 상호성이 보증되고 이것이 법규명령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기소된다. 국가재정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부(部)는 법규명령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로 권한이 부여되고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에 대하여 탈세에 관한 범행을 상호성의 보증으로 기소한다.

(7) 위 (1~6항)는 범행장소의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탈세에 관한

<p>auch für Taten, die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es dieses Gesetzes begangen werden.</p>	<p>범행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p>
<p><b>§ 371 Selbstanzeige bei Steuerhinterziehung</b></p> <p>(1) Wer in den Fällen des § 370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bei der Finanzbehörde berichtet oder ergänzt oder unterlassene Angaben nachholt, wird insoweit straffrei.</p> <p>(2) Straffreiheit tritt nicht ein, wenn</p> <p>1. vor der Berichtigung, Ergänzung oder Nachholung</p> <p>a) ein Amtsträger der Finanzbehörde zur steuerlichen Prüfung oder zur Ermittlung einer Steuerstraftat oder einer Steuerordnungswidrigkeit erschienen ist oder</p> <p>b) dem Täter oder seinem Vertreter die Einleitung des Straf- oder Bußgeldverfahrens wegen der Tat bekanntgegeben worden ist oder</p> <p>2. die Tat im Zeitpunkt der Berichtigung, Ergänzung oder Nachholung ganz oder zum Teil bereits entdeckt war und der Täter dies wußte oder bei verständiger Würdigung der Sachlage damit rechnen mußte.</p> <p>(3) Sind Steuerverkürzungen bereits eingetreten oder Steuervorteile erlangt, so tritt für einen an der Tat Beteiligten Straffreiheit nur ein, soweit er die zu seinen Gunsten hinterzogenen Steuern innerhalb der ihm bestimmten angemessenen Frist entrichtet..</p>	<p><b>§ 371 탈세행위에 대한 자진신고</b></p> <p>(1) 제370조의 경우에서 세무관청에 대하여 부정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정정, 보완하거나 없었던 진술을 후에 행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p> <p>(2) 단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p> <p>1. 정정, 보완 또는 사후신고 전에 다음의 사실이 있었던 경우</p> <p>a) 세무상의 검사, 조세법 또는 조세 질서위반의 조사를 위하여 세무관청의 공무원이 현장에 임했던 경우</p> <p>b) 법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해 범행에 관한 형사절차 또는 과료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p> <p>2. 정정, 보완 또는 사후 진술시에 당해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발각되고 동시에 범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당해 사태의 사려있는 판단에 의하면 그것을 예기하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p> <p>(3) 탈세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탈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탈루된 조세를 납부하면 범행에 관련된 관계자는 면죄 받는다.</p>

### § 374 Steuerhehlerei

(1) Wer Erzeugnisse oder Waren, hinsichtlich deren Verbrauchsteuern oder Einfuhr- und Ausfuhrabgaben im Sinne des Artikels 4 Nr. 10 und 11 des Zollkodexes hinterzogen oder Bannbruch nach § 372 Abs. 2, § 373 begangen worden ist, ankauft oder sonst sich oder einem Dritten verschafft, sie absetzt oder abzusetzen hilft, um sich oder einen Dritten zu bereichern, wird nach § 370 Abs. 1 und 2, wenn er gewerbsmäßig handelt, nach § 373 bestraft.

(2) Absatz 1 gilt auch dann, wenn Einfuhr- oder Ausfuhrabgaben hinterzogen worden sind, die vo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erwaltet werden oder die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Freihandelsassoziation oder einem mit dieser assoziierten Staat zustehen; § 370 Abs. 7 gilt entsprechend.

### § 374 조세은닉

(1) 소비세나 관세에 대하여 탈세가 있거나 수출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생산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매각을 보조하는 자는 탈세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2) 수입세나 수출세가 탈루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유럽공동체의 타 회원국에 의해 처리되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타 회원국 또는 동연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귀속되어 처리되고 제370조 7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법연구 06-02

##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

2006년 8월 28일 인쇄

2006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한상국 · 구자은 · 황진영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24-2

---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